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북

www.poscochemical.com

posco
포스코케미칼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북(편람)을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케미칼 임직원 여러분!

회사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어 공정거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율준수관리자 원형일 법무실장입니다.

2020년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분쟁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현실화되면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동맹 블록화 및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발생 이후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각국이 지속해 온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까지 더해지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단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과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단순 구호나
당위(當爲)로서의 접근을 넘어서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와 같은 근본 가치를 더욱 더 굳건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6년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체계화된 임직원 교육,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수행 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공정거래 업무를 정도경영실에서 법무실로 이관하여
공정거래 관련된 법규뿐 아니라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법규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법 위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회사는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 Risk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협력사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것이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회사 차원의 CP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개인 차원의 학습 및 점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빈번하게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회사의 성장을 제약할 것입니다.

이에 2021년 법무실은 임직원이 스스로 학습과 점검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당사 고유의 자율준수 편람을 새롭게 제정·배포하였으며 올해는 아래의
내용들을 보강하여 더 효과적인 학습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개정 내용 및 공정위의 최신 심결례를 반영하여
최신 법 지식을 한 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 위반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포함한 '당사 CP운영지침' 전문을 수록하여
회사 CP운영 방향 및 업무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과 같이 임직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법 내용을 요약 수록하여 편람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개정된 편람을 업무 지침서로 삼아 공정거래 Risk
요인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당사가 공정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 7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법무실장 **원형일**

개정사항 요약표

구분	개정 사항	개정 내용
1	인사말	편람 개정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2	요약표	개정사항 목록화
3	법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의를결제 관련 내용 삽입 ② 서면발급 예외 사유 변경 ③ 하도급법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④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⑤ 하도급법 제13조의3(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4	최신 심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1.12月~현재) ② 부당지원 (경동, 삼성웰스토리) ③ 거래상의 지위남용(쿠팡)
5	타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산업기본법(일부) ② 중대재해처벌법(일부) ③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표

I

관련부서 전사(全社)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01. CP(Compliance Program)의 개념	12
	02. CP의 핵심 8요소	14
	03. CP 모범 운영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16

03. 부당한 지원행위	
1. 개요	93
2. 부당한 자금지원	96
3.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99
4. 부당한 인력지원	108
5.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110

04. 공시제도	
1.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17
2.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34
3. 기업집단현황 공시	141

II

관련부서 구매/마케팅/경영기획

공정거래법 실무	0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21
	0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한 거래거절	23
	2. 차별적 취급	30
	3. 경쟁사업자 배제	40
	4. 부당한 고객유인	47
	5. 거래강제	54
	6. 거래상 지위남용	63
	7. 구속조건부 거래	76
8. 사업활동 방해	86	

III

관련부서 구매/본부별 협력계약 담당

하도급법 실무	0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160
	02. 하도급법의 체계	161
	03. 적용범위	164
	04. 법 적용대상 기간	180
	05. 위반시 제재	181
	06.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190

07.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① 서면발급의무	195
② 서류보존의무	199
③ 선급금 지급의무	208
④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215
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218
⑥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227
⑦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239
⑧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의무	247
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250
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257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① 부당특약 금지	263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269
③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282
④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293
⑤ 부당반품 금지	300
⑥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304
⑦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321
⑧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324
⑨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326
⑩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328

⑪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330
⑫ 보복조치의 금지	337
⑬ 탈법행위의 금지	340

3. 발주자의 의무사항

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343
---------------	-----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01. 공정거래법 관련	348
	02. 공시제도 관련	354
	03. 하도급법 관련	358

V

공정거래 자율점검 운영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364
	02. 건산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377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부서

전사(全社)

I. CP(Compliance Program)의 개념

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함.
- 『자율준수 매뉴얼』 또는 『자율준수편람』이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작성한 문서를 말함.

1.2. 이해당사자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
- 『경쟁업체』란 당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당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 『직원』이란 당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1.3. CP란?

- 당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1.4. CP 필요성

- ①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공정거래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발전
- ②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
 -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 ③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음.
- ④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CP의 핵심 8요소

2.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2.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2.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CP 운영 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함.

2.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세부 지침서로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함.

2.5. 교육훈련프로그램

-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6. 사전 감시체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 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2.7.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2.8.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3.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3.1. 경감제도의 의의

-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3.2. CP등급평가 인센티브

- CP등급평가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① 직권조사 면제

CP 등급	직권조사 면제	적용대상
AAA	2년	- 공정거래법 제23조 (단, 부당지원행위 제외)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AA	1년 6개월	
A	1년	

-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CP 등급	위반사항 신문 공표	적용대상
AAA	공표 면제	- 공정거래법 제23조 (단, 부당지원행위 제외)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AA	공표크기,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A	공표기간 단축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제도

1. 공정거래제도 개관

구분	내용
공정거래법이란?	-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법 법률 중 하나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기타
공정거래법의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 경제력 집중 억제 : 사업자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쟁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부당가격 혹은 조건 부과 등을 의미 - 부당 공동행위 금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낙찰자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 금지를 의미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인력, 비용 등 상당히 유리하게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해당

2. 공정거래법의 역할

- ①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활력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자유로운 기업시스템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혁신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
- ②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③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음.
- ④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 결과 기업 및 관련 임직원들 모두에게 매우 가혹할 수 있음. 비단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유·무형적 손실도 감안해야 할 것임.
- ⑤ 그러므로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오산임.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모든 직원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여야만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II

공정거래법 실무

관련부서

구매/마케팅/경영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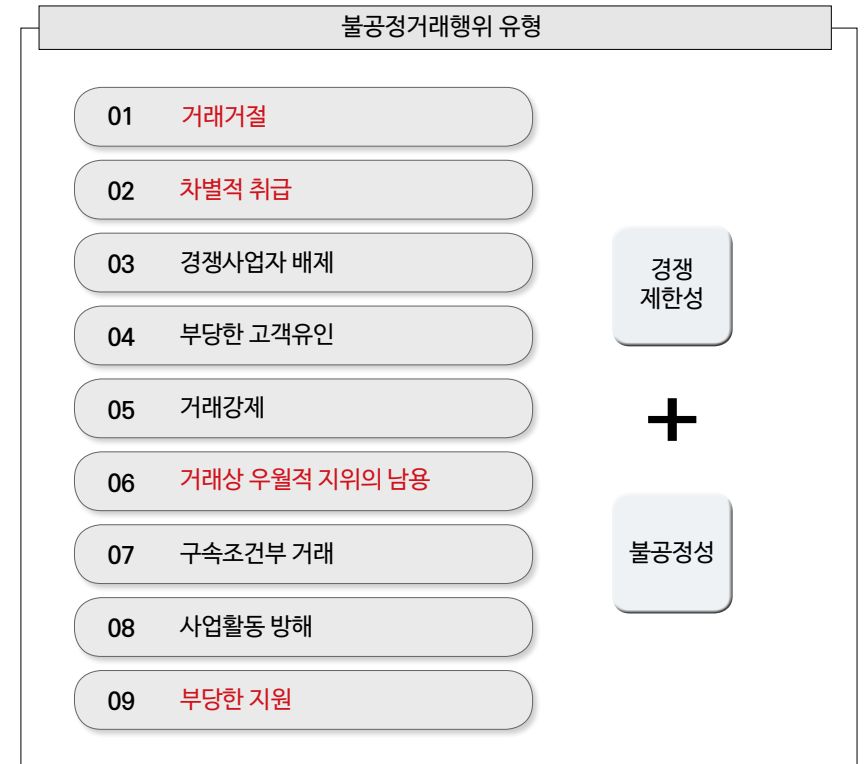
1. 공정거래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구분	내 용
불공정 거래행위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23조)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지원행위)
부당 공동행위	-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①항)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19조)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② 거래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 관리 ⑧ 입찰담합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지원행위)
부당 지원행위	-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7호) ▶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함 ▶ 부당내부거래 유형(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0호)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④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1.1. 불공정거래행위란?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 제23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에서는 9가지 유형, 28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1.2.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의 핵심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공정거래저해성에 있음.
 - 공정거래저해성은 ‘부당하게’와 그 의미가 동일하며,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 * 경쟁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판례, 학설, 공정위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행위유형별로 나눠 당해 행위의 특성, 거래당사자의 지위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1.3. 위반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5억 이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동시적용 가능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관련 매출액의 5%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20억 이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2.1.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 위반에 해당

①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이런 행위는 하면 안돼!)

1.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
3.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1.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됨.
 - 아래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① 재고 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③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가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④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⑤ 공동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1.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됨.
3.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위법성 판단 기준

1. 거래거절 물품, 용역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2.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3.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4.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
5.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합리적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1.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 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3.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4.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㉕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㉖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㉗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㉘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㉙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㉚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㉛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하면 X.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포스코는 협력작업 계약에 따라, 화성기업(주)과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화성기업 대표에게 협력작업의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계약 만료시점에 거래를 종료함.

공정위 판단 화성기업(주)는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포스코사업장에 투입하고있으며, 포스코 이외의 거래처 확보가 어려움으로 포스코는 화성기업(주)에 대하여 우월적지위에 있음.

사업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위와 같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나, 본 건은 협력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되는 계약관계로서 사업양도에 응하지 않자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

사례 2

사실관계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사업자인 A는 A를 통해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B사가 A사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고, A사의 치료기와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한 거래를 중지함.

공정위 판단 대법원은 A와 B 간의 계약에서 B가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오로지 A로부터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독점적, 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B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는 것이 위 계약에 위반된다거나 자체 개발한 제품이 A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사제품이라 볼 수 없어 A의 거래거절에 위 치료기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

• Q&A

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B로서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사정상 A의 거래거절 이후 대체공급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기에 A의 거래거절은 B의 거래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4098판결)

Q1 계약만으로 따라 상대방 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1 계약자유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고, 계약만으로 시점에 즈음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전통보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이는 매우 추상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먼저, 계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 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된다면 계약종료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우리와의 거래를 믿고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큰 경우, 상대방과 이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의 거래중단은 부당한 거래거절이 될 수 있음.

Q2 본사가 정해진 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는 이유로 판매점과 거래를 중단하였다면?

A2 판매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품 판매가격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따라서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위반임. 또한 이를 이유로 거래거절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한 거래거절로서 불법행위임.

Q3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A3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함.

2.2.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법 위반임.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행위

- *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 여기에는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 ①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 ①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선을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②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 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체에 종사하

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2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이는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함.
2. 거래조건 차별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위법성 판단기준

1.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단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㉓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이 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①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②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㉓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㉔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㉔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 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㉕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4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이 대상이 됨.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음. 또한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함.
2. 차별취급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이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함.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㉗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㉘ 합리적 이유 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㉙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가공비 6.7% 인상함.

공정위 판단 위와 같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행위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의 상승은 업종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나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만 가공비를 인상하여 주는 행위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부과.

사례 2

사실관계 포스코는 열연코일을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비계열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에게는 제품출고 전에 선수어음 및 외상 30일로 받는 반면 계열회사는 제품 출고 후 70일 만기어음으로 받음.

공정위 판단 위와 같은 포스코의 행위는 거래규모, 판매가격 등 제요인을 검토해 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한 행위로 인정됨.

● Q&A

Q1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가?

A1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음.

Q2 특정 판매점에게만 가격할인, 보조금 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A2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게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판매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큼.

Q3 계열회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상사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A3 물량 이외의 거래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느 상사에게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가는 자사의 재량이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계약기간 중 물량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Q4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A4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2.3.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①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계속적 염매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
 - 일시적 염매 :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더라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대상 행위

1.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음.
2.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말함.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매입원가는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계열회사관계나 제휴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 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3.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함.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속적 염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4. **부당염매**는 유인염매 또는 할인특매와는 구별됨. 유인염매란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과 같이 하거나 상향 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이는 판촉전략의 하나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는 구별됨. 한편, 할인특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염매와 구별됨. 첫째, 할인특매는 공시의 방법으로 실시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간이 확정적인 점. 둘째, 할인특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점 등임.

◎ 위법성 판단기준

1.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
2.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그러나, 계속적 염매를 한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①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 ②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③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 ④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⑤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⑥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⑦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일시적 염매의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 ②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③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클 수 있음.
- ④ 진입장벽 유무 등. 규모의 경제·사업영위 인허가 등 요소가 없어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현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없거나 미미하게 됨.

- 일시적 염매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②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③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④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⑤ 일시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⑥ 일시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㉞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㉟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㊱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2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대상 행위

1.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함.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 위법성 판단기준

1.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을 수 있음.
 - ③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② 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㉓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㉔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인천광역시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시스템통합 용역 입찰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함. 이 용역입찰의 예정가격은 97,244,000원이었음. 이 입찰에는 현대정보기술이 2,900,000원에, 대우정보시스템이 19,440,000원에, 삼성데이터시스템이 33,300,000원에 응찰하였고, 현대정보기술이 낙찰자가 되었음.

공정위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이 저가에 입찰한 행위가 부당염매행위인지와 관련하여 낮은 대가인지 여부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체의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 모두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함.

다만, 법원은 경쟁사업자들 역시 염가에 입찰하였고, 발주처가 향후 해당 용역과 관련된 장비 및 용역을 추가 구매함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사실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역은 1회성 사업이었으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기에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4.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됨.
2.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함.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도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를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제공(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함. 또한, 과도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하되, 제공되는 이익이 경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공정위 고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②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이익제공(제외)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이익제공(제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이익제공(제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부당한 이익제공(제외)을 함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㉓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공정위 고시)」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품(예시 :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경품가액이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제공하는 행위
- ㉕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구체적 예시 >

- ①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 ② 출판사가 자사의 서적을 교재로 소개 또는 추천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 ③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이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
- ㉔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됨. 또한, 기만 또는 위계는 표시나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2.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이 됨.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가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됨.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됨.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 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됨.
3. 기만 또는 위계의 상대방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

- ①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함.
- ②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㉞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㉟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 ㊱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어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

주하는 행위

- ㉔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㉕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거래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됨.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음.
2.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됨.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함. 거래방해 그 자체가 거래조건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할 경우 고객유인의 효과가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음.
- ②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㉗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㉘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5. 거래강제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강제의 경쟁저해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 지위의 우월성과 행위의 강제성이 충족되어야 함

①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음.
3.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별개의 상품(또는 용역)인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밀접불가능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함.
 - ②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이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 ③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봄.
 - (-)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 반면,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경

우에는 장래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 예시 〉

-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타이어 등)
-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이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두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나) 끼워팔기가 발생한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 여부로 판단함.

- ④ 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끼워팔기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㉞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㉟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2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임원이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사용인을 말함. 직원이란 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함.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음.
2.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컨대, 매장 기타 영업소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 위법성 판단기준

1. 사원판매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임직원에게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측의 구입·판매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함.
- ② 임직원에게 대한 구입(또는 판매)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 구입(또는 판매)강제로 인하여 임직원이 실제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음.
- ③ 그밖에 사원판매의 기간이나 목표량의 크기는 위법성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 ① 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부도 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㉓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㉔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㉕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㉖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이에는 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함.
2.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 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 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됨.
3.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거래강제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②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 해당여부는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된 거래관계에서 공급량이나 구입량의 축소,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개시, 판매장려금 축소 등이 있음.
 - ③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 상대방이 주된 거래관계를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반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봄.

- 기타의 거래강제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기타의 거래강제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 ① 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의 거래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㉓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㉔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는 인천마전 등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상동 등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함.

공정위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따라서 위와 같은 연계판매행위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2.6.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1) 금지 이유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됨.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2) 거래상 지위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인 거래관계 존재해야 함.

- ①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됨. 이렇게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
- ②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함.

①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움.

②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

(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라)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 간 거래관계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 간 거래관계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3)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나)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1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㉗ 합리적 이유 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㉙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㉚ 합리적 이유 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㉗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㉘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㉙ 합리적 이유 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 ㉚ 합리적 이유 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2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됨. 이익제공 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됨.

3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 대체로 상품의 경우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확보가 문제됨.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거래내용의 공정성 판단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도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목표 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음.

- 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㉞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㉞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㉞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㉞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㉞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불이익제공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당해 행위를 할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 **대상 행위**

1.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2.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

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행위

< 불이익 제공 >

-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5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① 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 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경영효율성의 제고 또는 상품의 안전성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배달앱의 하나인 요기요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 보다 음식점으로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 최저가보상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최저가보상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가격 변동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요기요에 대해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 사업자로 판단하고,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

사례 2

사실관계 한국야쿠르트는 시장변동 상황, 근무일수 및 전년도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지점별, 제품별 다음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음. 또한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목으로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15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하면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함.

공정위 판단 위탁대리점이 우유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 따라서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

사례 3 공정위 최신 심결례

사실관계 쿠팡(주)는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

공정위 판단 쿠팡(주)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함.

• Q&A

Q1 판매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관한 정보, 매출 상세정보, 생산/판매/재고 현황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1 판매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확보하고 동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매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만 가지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단,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Q2 판매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가?

A2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계획량은 판매점이 전 분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판매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Q3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A3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거래상대방의 주문이 없는데도 회사의 재고량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3.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4. 거래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2.7.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 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

①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함.
 -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함. 따라서 판매업자의 소요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배타조건부 거래의 내용에 포함됨.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됨.
 -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

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 위반시 거래 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채권회수, 판매장려금 지급중지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음.

◎ 위법성 판단기준

-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신규진입자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시장배제효과가 낮게 됨.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 상대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
 -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서의

신규진입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음.

- ⑦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

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 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판매지역 구속에는 그 구속의 정도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할 뿐 그 지역외 판매를 허용하는 책임지역제(또는 판매거점제), 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 지역제한제(Open territory),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제(Closed territory)로 구분할 수 있음.
2.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임. 예를 들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리점(또는 판매업자)을 가정용 대리점과 업소용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거래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지정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3. 상기의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함.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함.

◎ 위법성 판단기준

1.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내 경쟁제한

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함.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상기 요인 이외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 서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정위 판단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기준,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해 주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즉, 대리점이 크라운제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크라운제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심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위반에 해당함.

사례 2

사실관계 (주)국순당은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도매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설정함.

공정위 판단 1.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도매점은 (주)국순당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주)국순당이 영업에 관하여 지위, 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국순당이 명확한 이유의 고지 없이 일부 대리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일방적으로 축소 내지 중단한 것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에 있는 (주)국순당이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 계약해지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도매점들이 (주)국순당의 부당한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3. 판매지역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3조 제2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며, (주)국순당은 도매점들이 계약서상 합의된 거래지역 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였기에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4.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의결 제2013-098호)

사례 3

사실관계 (주)정식품은 부산지역 전 대리점장들에 대하여 오프라인 대리점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양할 것을 교육 전달함

공정위 판단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공정위는 거래의 상대방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 인터넷쇼핑몰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정식품의 서면 및 구두 공지, 확인서 작성 강요 등의 행위는 대리점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판매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또한 이는 사실상 자신이 공급하는 두유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 나아가 두유시장에서 약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정식품이 소속 대리점들로 하여금 인터넷쇼핑몰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브랜드 내에서 가격인하 유인을 축소시킬 우려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주)정식품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림. (약식 제2009-206호)

• Q&A

Q1 제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시 계약서상에 판매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위반이 되는지?

A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됨. 단, 지역의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제, 판매거점제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Q2 대리점에게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A2 지역제한의 경우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지역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됨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 설정할 뿐 지역외의 판매도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지역구속성이 강한 지역제한은 문제가 됨. 예컨대 해당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고,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Q3 제조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3 자사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2.8.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①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또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함.

◎ 위법성 판단기준

1.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됨.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기술의 부당이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㉞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②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 위법성 판단기준

1.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㉞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㉟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 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1.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 위법성 판단기준

- 1. 거래처 이전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거래처 이전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거래처 이전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㉞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4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대상 행위

1.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됨.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 위법성 판단기준

1.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㉞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㉟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든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 ㊱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Q1 경쟁사에서 차세대 사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직원 약간명을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여 당사로 옮기게 한 경우 사업활동 방해가 될 수 있는가?

A1 인력의 유인·채용이 사업활동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동 채용으로 인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일반직원을 유인·채용한 경우에는 사업활동 방해로까지 되기는 어려움.

Q2 당사가 경쟁사 특정 부서의 중견 직원 수명을 순차적으로 스카우트 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2 당해 부서에서 스카우트한 직원들이 차지하는 역할, 이로 인해 경쟁사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3. 부당한 지원행위

3.1. 개요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① ‘부당지원행위’의 정의

● 법률 및 판례에 따른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부당하게』 의미 (대법원 2004.9.24. 2001두6364 판결)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

*** 부당 지원행위의 입법취지(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음.

2 부당성 판단기준

◎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⑤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대법원 판결**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장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3.2. 부당한 자금지원

①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자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②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③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② 업무상 유의사항

Do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 기간의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 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함.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내에 회수하고, 변제기를 초과하여 회수하는 경우 지원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Don't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적용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7%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의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하는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음.

공정위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255)

3.3.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①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 ①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②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 ③ 계열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②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함.
- * 임대료 산정 시 당해 부동산의 종류,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함.
- * 계열사 간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공받아야 함.

-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의 조건은 비특수관계인의 거래조건과 비교함.
- * 상품·용역거래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 기록 관리하여야 함.
- * 계열사 지원시 지원주체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 지를 고려하여야 함.
-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함(수의계약의 필요성).
-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라야 함.
 - 정상가격이란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 산정시 내부와 외부거래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함.
 - 상품 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점(장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함.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 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검토하여야함.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함.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함.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므로,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 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함.

Don't

-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음.
- * 계열사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함.
-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됨.
-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됨.
-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됨.
-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여서는 안됨.
-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여서는 안됨.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안됨.
- * 계열사 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
- * 계열사 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안됨.

● 관련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현대자동차가 2001.2.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 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 총 매수대금 42,330,000,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0%에 해당하는 5,709,517주와 합쳐 11.52% (14,009,517주)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된 사실,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3.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간외 증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대금 67,666,000,000)에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음.

법원 판단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앤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이고, 원고 기아자동차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리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5963)

사례 2

사실관계 현대상선은 징수 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대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 1.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현대상선이 현대물류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현대물류에게 추가약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건비 등을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 사용대가의 지급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추가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합의하여, 현대물류의 수수료 지급 지체 책임을 사실상 면책시킴.

법원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행위 전부가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사례 3

사실관계 피심인은 (주)온미디어와 사이에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교환광고'를 하였으며 이후 교환광고 관련 상호 정산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심인은 2003.9.20 ~ 2007. 8.22기간 동안 당시 피심인의 계열사인 (주)온미디어의 채널브랜드(OCN, OnStyle, SuperAction 등)에 대한 광고를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영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335백만원의 가치가 있음.

반면 (주)온미디어는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이 주최한 '서울유럽영화제'의 홍보영상물을 무상으로 제작하여 피심인이 제공하는 한편, 2003년, 2005년, 2007년 중 78회에 걸쳐 서울유럽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자신의 영화채널(OCN)을 통해 무상방영 해주었으며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중에는 피심인이 주최한 '일본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160회에 걸쳐 자신의 영화채널(OCN)을 통해 무상 방영해 준 사실이 있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21백만원의 가치가 인정됨.

한편, 피심인이 2007.9.19. 호주 맥커리펀드 계열로 매각이 결정되어 피심인이 오린 계열에서 분리된 이후부터는 (주)온미디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2007.12.19 ~ 2008.1.2. 15일간 총 22개의 메가박스 상영관에 채널브랜드를 상영하고 광고료 총 22,209,670원을 지급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와 실시한 교환광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계열사인 (주)온미디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됨.

첫째,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에 제공한 무료 극장광고의 가치가 당시 피심인 극장에 적용되는 광고대행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총 7,335백만원에 달하는 반면, (주)온미디어가 피심인을 위해 제공한 영화제 홍보영상물과 예고편 광고방송은 당시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에 대한 제작비 수준이나 (주)온미디어 광고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21백만원에 불과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함.

둘째, 교환광고를 함에 있어 상호 간 명시적 계약이나 경제적 가치의 명확한 계산, 정산과정 등이 없이 실행되었을 뿐 아니라, 극장매체와 방송매체는 매체 간 광고단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광고기간·횟수면에서도 피심인과 (주)온미디어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계열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업계 교환광고 관행과 배치됨.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교환광고행위가 사업적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전형적 업무제휴이며, 지원행위성 판단시 지원주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지원객체에게 이전한 경제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동 경제적 이익은 피심인이 영화광고대행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에 제공한 급부의 정상가격보다 (주)온미디어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이 더 크므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계열사라 하더라도 광고영화 상영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것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무상으로 광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제휴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시 급부의 정상가격은 지

원주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으로써 (주)온미디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피심인의 극장에 상영하였다면 부당하였을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방법으로 급부 및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급부의 정상가격(7,335백만원)이 반대급부의 정상가격(12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사례 4

사실관계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원고 글로벌비스가 설립(2001년 2월)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1년 3월부터 원고 글로벌비스가 통합 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원고 글로벌비스에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줌.

법원 판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벌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준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점, 글로벌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글로벌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본 건 지원행위로 글로벌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익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벌비스가 설립 후 2년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벌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하였음. (서울고법 2009.8.19. 선고 2007누30903판결)

사례 5

사실관계 기업집단 KPX 소속 진양산업(주)는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Vinafoam)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약 3,677백만원)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함.

공정위 판단 (주)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기존 매출의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되었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35백만원 부과(진양산업 1,362백만, 씨케이엔터 273백만) 함.

사례 6

사실관계 롯데칠성은 자회사 엄제이에이와인(주) (이하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①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로 공급, ②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③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함.

공정위 판단 이러한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하여 총 35억원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MJA의 재무, 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원 부과(롯데칠성 7억 7백, MJA 4억 7천 8백) 함.

사례 7

사실관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티비(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지원금액 약 19,992백만원)함.

공정위 판단 본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되었으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함. 특히, SK텔레콤은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됨.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96백만원 부과(SK텔레콤 3,198백만, SK브로드밴드 3,198백만)함.

사례 8

공정위 최신 심결례

사실관계 기업집단 '경동' 소속 (주)경동원은 계열회사인 (주)경동나비엔에게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 심지어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납품함.

공정위 판단 이러한 경동원의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 강화, 관련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거래 저해 효과가 나타남.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6억 8천만원을 부과함(경동원 24억원, 경동나비엔 12억원)

사례 9

공정위 최신 심결례

사실관계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지급, 물가/임금인상을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공정위 판단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함. 또한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단체 급식 경쟁 입찰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했고, 지원행위에 의해 웰스토리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 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 여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및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함.

3.4. 부당한 인력지원

1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 ①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② 인력과건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③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상 유의사항

Do

* 업무지원을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함.

Don't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음.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음. 삼양식품 소속인 이○○는 2007.5.31.부터 2011.3.28.까지, 그리고 박○○은 2011.3.29.부터 2015.3.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음.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음.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음.

3.5.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1 정의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 ①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②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2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함.(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 입증
-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는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과 거래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Don't

-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지 않음.
-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지 않음.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음.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옴.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장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이익을 실현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구)엘에스전선[현(現) (주)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례 2

사실관계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남.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켄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켄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함.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까지 함.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1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년 4월 ~2017년 9월)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주)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례 3

사실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하였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㉓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㉔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㉕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㉖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㉗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㉙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㉚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㉛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Q1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1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문제됨.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 자산, 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Q2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가?

A2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음.

Q3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시키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A3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4. 대기업집단제도 및 공시

4.1.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 적용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해당
 -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
 -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란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지는 않으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시행령 제14조)

- 당해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 *그룹 총수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 내 대표회사를 말함 (포스코기업집단의 경우 ㈜포스코가 동일인임)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 관련자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와 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이 포함 (시행령 제4조 제1호)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② 적용 대상회사 및 대상거래

(1) 법 적용 대상회사 : 공정거래법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포스코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므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음.

(2) 적용 대상거래 :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금거래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음)
- 유가증권거래는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
- 자산거래는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포함함.

- 단, 상품 및 용역거래의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기업집단(포스코, KT 등)에 소속된 회사는 적용되지 않음.

↳ 상품·용역거래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정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봄.

(3) 적용 대상거래의 판단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간주
- 동일 거래상대방과 같은 날 약관에 의한 여러 건의 기업어음거래가 동일 조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으로 거래되는 경우 하나의 차입행위로 보아 기업어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의무 여부 판단
- 계약서상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함.

(4)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 결제
- 주식을 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장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다만, 장 종료 후 시간외 거래는 공시대상)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 간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 체결

3 거래금액의 산정

- 자금·자산·유가증권 거래 : 실제 거래금액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 이자율*) - 연간 관리비
-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적용(매년 개정)

4 공시시기 및 절차

(1) 공시시기

-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해야 함. (단, 비상장법인인 7일 이내 공시)
- 공시하여야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함. (7일의 기간 계산은 비영업일을 포함하며, 비영업일은 당해회사의 비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2) 공시절차

-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5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신고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분. 다만 그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해야 함.

6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다음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조건(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 보다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 시에는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하면 됨.

■ 포스코 ESG위원회 내부거래 운영현황

-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에서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심의
 -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ESG위원회 심의, 의결
 -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 ESG위원회 사전심의 후 이사회 의결

7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9조, 시행령 제36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를결을 거친후 공시를 해야함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1)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 취득 및 처분

-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행위(주식 수, 거래금액과는 관계 없음)

(2)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내부거래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를 위하여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자신의 순자산총계·기본 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

※ 이외의 규정은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제26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함

8 위반시 과태료 부과

(1) 기본금액

이사회 의결 여부	위반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공시 기한 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2,000
	공시 기한을 넘긴 경우	공시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	5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7,000	

(2) 기준금액

-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거래 금액	적용 비율(%)
100억원 이상	100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90
6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60
20억원 미만	50

(3) 임의적 조정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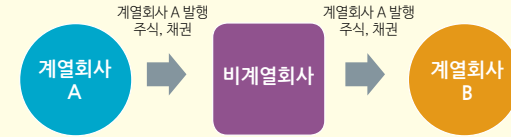
-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의 가중 또는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면금액
-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 임의적 감면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면비율의 합계

- 가중 조정사유 및 비율
 -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 감면 조정사유 및 비율
 -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 계열 금융 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 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 ▶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 Q&A

Q1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1 계열회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회사로부터 계열회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회사 B는 계열회사 A를 위한 거래(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 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됨.

Q2 양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A2 거래규모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있음. 만일 거래규모가 일방당사자 에게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래당사자에게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회사가 편입일 이전에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부과되는지?

A3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편입일로부터 발생함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없음. 다만,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로 편입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 하여도 거래금액, 거래일시, 거래방법 등이 명시된 세부 거래조건이 아닌 단순 약정형태로 체결하고 있던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 편입된 이후 세부 거래조건 등을 별도 체결한 거래이거나, 당초 거래 조건이 변경되는 거래라면 거래 개시 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음.

Q4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A4 만기가 도래한 거래의 연장은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발행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후 이를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6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50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A5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Q6 당사는 포스코의 상법상 자회사입니다. 당사와 포스코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A5 포스코는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포스코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 간의 상품·용역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Q7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비영리법인에게도 부과되는지?

A7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는 신설(2021.12.30일부)되었으며,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음. 다만,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는 계열회사는 거래금액*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Q8 부동산 매매계약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별도 공시하여야 하는가?

A8 중도금과 잔금 지급은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별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음.

Q3 1일 총거래금액이 자본금의 5% 미만이며 50억원 미만일 경우(예 4월 12일 거래금액 40억원, 4월 14일 거래금액 10억원)에도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 않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필요성이 없는지?

A5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이 되는 거래는 모두 건별 기준임.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동일 목적을 위한 동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3 부동산임대차 계약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A5 변경계약은 새로운 거래에 해당되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3 부동산 매매시 거래금액에 VAT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연간임대료 산출지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A5 VAT와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

Q3 회사 CI(로고) 사용에 대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A5 계열회사와 CI(로고,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자산거래에 해당되므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3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연장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A5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만기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는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음. 다만, 특별한 사정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어 만기연장 효과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3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주식을 소각하고 계열회사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자에 따른 부수적인 거래로 보아도 되는지?

A5 유상감자를 위해 출자한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여 그 보유주식 가치만큼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외계열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A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국외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없음.(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1.12.30일부 시행). 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국외계열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2011년 11월 포스코로부터 유상증자(52억원) 받은 사실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공시항목 중 주요 사항인 증자 참여자 및 회사와의 관계를 누락하고 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사항 작성시, 유상증자 참여자 / 유상증자내역 / 회사와의 관계 등은 공시항목 중 주요사항에 해당하여 이를 미기입할 때에는 공시사항 누락에 해당하게 됨. 과태료 1,400만원 부과

기업집단명	포스코	회사명	공시일자	2011.12.29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단위 : 백만원)						
1. 유상증자 참여자		회사의 관계				
	가. 출자금액	5,223,335,000원				
	나. 출자주식수(주)	1,044,867				
2. 출자참여내역		다. 출자 후 지분율(%)				
	라. 출자방법	현금출자				
	마. 1주당 가격(원)	5,000원				
3. 유상증자내역		가. 증자금액				
	나. 증자주식수(주)					
4. 이사회 의결일		2011.12.27				
- 사내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명				
5. 기타						
※ 관련공시일		2011.12.29				

사례 2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억1천5백만원을 차입받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2012. 12. 21)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2013. 3. 29)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대규모내부거래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는 1일 이내, 비상

장사는 7일 이내 DART시스템에 공시해야 함. 과태료350만원 부과.

기업집단명	포스코	회사명		공시일자	2013.03.29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1조의2
-------	-----	-----	--	------	------------	------	-------------

(단위 : 백만원)

1. 차입유형	정기차입금		
2. 차입 내역	가. 계약체결일 2012.12.21		
나. 차입처	(주)포스코건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다. 차입기간	2012년12월28일 ~ 2014년12월25일	상환일	2014년12월25일
라. 차입금액	215		
- 직접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595		
- 자기자본대비 (%)	13.74%		
마. 이자율(%)	8.50%		
바.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3. 자금용도	운영자금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 (당해 사업연도 기준)	215		
5. 이사회 의결일	2012.12.21		

사례 3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포스코로부터의 부동산 매수 관련 대규모내부 거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면서, 거래일자를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포스코계열회사 △△는 포스코로부터의 부동산 매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면서, 거래일자를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1,800만원 부과.

1. 성명(법인명)	(주)포스코
-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매매일자	-
거래목적물	토지(96,000㎡)
2. 부동산매수 내역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88-11
소재지	
거래금액 (원)	9,975,000,000
거래상대방 누계금액 (원)	9,975,000,000
거래손익 (원)	-
3. 거래의 목적	부지내 공장신설
4. 결정일(이사회결의일)	2010년 10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 참석여부	불참
5. 증권거래법 해당여부	아니오
6. 기타	매매일자는 공시 이후 결정될 예정 거래금액은 최종거래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공시일	

사례 4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의 유가증권 매입 항목에 대하여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양식이 아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사용해 공시하였음.

공정위 판단 포스코계열회사 △△는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의 유가증권 매입 항목에 대하여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양식이 아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사용해 공시하였음.

사례 5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2001년 7월 포스코로부터 436억원에 부동산을 임차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포스코계열회사 ○○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일정한 거래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과태료 7,000만원 부과.

사례 6

사실관계 케이파워는 SK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2004년 12월 30일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주식회사(現 에스케이에너지)로 부터 2,299억원의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이에 대해 2004년 12월 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동 이사회 의결내용을 공시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케이파워와 에스케이주식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이사

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나, 이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함.

사례 7

사실관계 아시아나항공(주)는 2003년 7월 29일 계열회사인 금호종합금융(주)로부터 115억원의 기업어음을 할인 발행하였으며, 2003년 8월 29일 및 2003년 9월 30일 각각 만기어음을 상환하지 않고 기업어음을 재발행 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수수 없이 이를 연장하였음.

공정위 판단 기업어음 할인금액을 만기상환 하지 않고 이를 재발행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이 또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과태료 9,800만원 부과함.

사례 8

사실관계 포스코는 대한전선으로부터 2010년 포스코AST 주식(120억원)을 취득 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매입한 계열회사 주식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포스코가 대한전선으로부터 포스코AST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3자와 의 거래이긴 하나 계열회사를 위한 주식거래로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 보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과태료 7,000만원 부과함.

사례 9

사실관계 포스코 계열회사 △△는 2011년 ○○계열회사에게 주식근질권 담보를 제공키로 하고 이사회 의결하였음. 이후 2013년 담보실행시점에 ○○계열회사는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계열회사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과태료 7,000만원 부과함.

4.2.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공시를 하여야 함

①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개관

- 공시대상회사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 (단, 금융·보험사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로부터 공시의무가 부과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공시 의무가 없음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부터 계열 제외된 회사 또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 제외 또는 지정 제외된 날로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주식보유 변동의 공시기준일(변동일)**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 주권을 교부받은 날
-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
- 회사지분 양수시 : 지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 변동이 확정되는 날

② 공시대상 업무

(1)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비고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변동일	변동비율 1% 이상	최대주주 중 구성원 변동도 공시
임원의 변동	등기일	변동 내용(신임/해임 등)	등기부등본 기준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함.
 - 액면분할 등에 의해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현황 및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없음.
 -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각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최대주주의 주식수나 지분을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주주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공시

- 최대주주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등기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시
-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임원이 중임된 경우에는 변동이 아니므로 공시의무가 없으나,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예) 이사가 감사로, 이사가 대표이사로)에는 임원의 변동이므로 공시해야 함.

(2)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비고
비유동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이사회 (대표이사)의 결정일	자산총액의 10% (납입자본금의1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 자산 모두 포함(ex. 건설 중인 자산)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처분		자기자본의 5%	타법인 (국내·해외계열회사 제외)
증여 또는 수증		자기자본의 1%	무상으로 타인과 재산을 주고 받는 모든 행위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5%	-
채무의 면제 인수		자기자본의 5%	-
증자 또는 감자		결정 여부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공시 해당 여부 확인
전환사채·신주인수 권부 사채발행		결정 여부	추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에 한정함

※ :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비유동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항목이 포함. (건설 중인 자산, 투자유가 증권도 포함)
 - 공시기준일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이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수년에 걸쳐 지급되는 공사비가 기준금액을 과하다라도 공시대상이 아님.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 법인(국내·해외 계열회사 제외)의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자기자본의 1% 이상의 증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공정거래법 10조의 2에서 말하는 채무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채무보증인 사항은 모두 포함
 - 따라서,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담보제공일 경우도 공시대상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해당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시사유가 됨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모든 사채가 아니며, 추후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에 한정 됨

- 적용기준
-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12월 결산법인 : 금년 4. 1 ~ 다음해 3. 31)
 -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3)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비고
영업의 양도·양수	이사회 (대표이사)의 결정일	결정여부	상법 제374조에 근거
주식교환 및 주식 이전		결정여부	상법 제360조2의 규정과 제360조15에 근거
회사합병·분할		결정여부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에 근거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등		결정여부	상법 제517조에 근거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또는 주식이전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
-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폐지 및 「회의법」에 따른 회의개시 또는 폐지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중단·해제가 결정된 때 그 결정사항

3 공시시기

(1) 공시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단, 임원변동현황 공시는 분기 공시(등기일 속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 까지 공시
- 기간 계산은 사유발생일부터 하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함

(2) 사유발생일 기준

- 소유지배구조 관련 '변동이 있을 때'란
 - 주식을 교부받은 날,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권리가 이전되는 날
 -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그 외의 경우 감사 또는 주식의 소각 그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확정되는 날

-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
- 재무구조 관련 '결정이 있을 때'란 이사회 의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

4 공시방법 및 절차

-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공시양식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 준용.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4.3. 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 또는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1 기업집단현황 공시

(1)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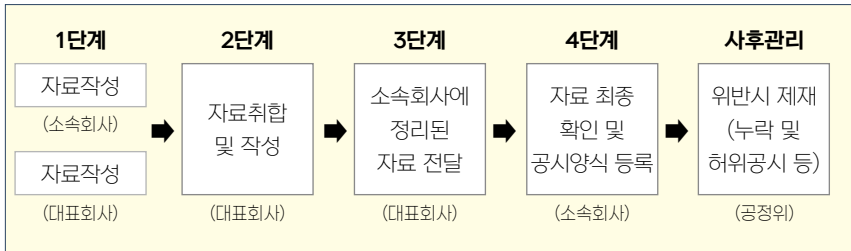
-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2009. 3. 3 국회통과)하는 대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와 기존의 공시·공개제도의 차이점

-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공개하는 제도와 중복 여부
않나요?
 - 정보공개제도는 출자현황 등 소유지배에 관련된 정보만을 공정위가 공개하는데 비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는 소유지배구조 외에 해외계열회사현황, 거래현황 등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차이
- 기존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등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존의 공정위 공시제도,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등은 개별회사가 개별 거래 건에 대해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집단 전체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함.

-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 연결재무제표는 회사 간 지배-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고, 결합재무제표는 2009년의 경우 작성 기업집단이 14개에 불과하여 기업집단 전체현황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음.

(2) 공시업무 PROCESS



- **소속회사**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당해 회사로, 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 **대표회사** : 당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

(3) 공시의무대상 회사

구분	대표회사	소속회사
해당회사	(주)포스코	포스코기업집단 소속 국내 소속회사
공시사항 작성	자기회사 관련 내용을 작성	
공시내용	자기회사 관련 공시사항 소속회사로부터 취합한 내용	자기회사 관련 공시사항 대표회사의 공시를 참조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익법인의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거래 현황 공시내용 추가 (연 1회)

② 공시내용

(1) 공시양식 1~6(연 1회)

공시항목	공시 주체	공시 기준	공시 기준일	공시빈도
회사개요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금년도 지정일	연 1회
재무현황		개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직전 사업 연도말 기준	
손익현황		개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해외계열 회사현황	해외계열회사에 최다출자한 소속회사	해외계열회사 일반현황 (회사명, 업종, 소재지)	금년도 지정일	
계열회사 변동내역	계열편입 : 편입회사 계열제외 : 대표회사	국내 및 해외계열회사 변동 내역을 공시	전년도 지정일~ 금년도 지정일 전일	
임원현황	소속회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성명, 직위, 등기일, 경력 등)	금년도 지정일 기준	

▶ 계열회사 변동내역은 공시기한 중 변동된 계열회사만 작성

(2) 공시양식 7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 권 등의 운영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이사회 구성원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여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일 등을 공시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 상법 제393의2조에 따른 위원회(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에 한하여 기재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 「도입여부 판단기준」(금년도 지정일 기준)
 집중·서면투표제는 정관내용 기준, 전자투표제는 이사회 결의 기준으로 해당에 ○, × 로 표시
-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까지)
 주주총회에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있는 경우 “○(실시)”로 표시
-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통한 일반 주주의 결권 행사 비율 기재
-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행사자, 행사 사유 등을 기재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 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3) 공시양식 8 : 소유지분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소속회사의 소유지분현황
- 공시기준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을 동일인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로 작성

지분율 계산법

- 보통주 지분율 = (보유 보통주수 / 총 발행 보통주 주식수) × 100
- 우선주 지분율 = (보유 우선주수 / 총 발행 우선주 주식수) × 100

↳ 동일인 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동일인 측의 주식소유 상세내역을 함께 공시하고 자기 주식은 최대주주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자기 주식이라고 표시

(4) 공시양식 9 :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소속회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보유현황(상법상 회사만 해당)
- 공시기준 :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
 - ※ 직전분기말 장부가액이 없거나 평가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검토보고서 내지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기준(단, 주석으로 표기)

(5) 공시양식 10~11 : 자금 차입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해당분기 중 발생한 순수 자금 차입약정 등을 통한 차입금을 기재
 (제외대상 : 사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가수금, 제품, 원자재 수입에 따른 외화 단기차입금, 콜자금, 만기 7일 이내의 증권 금융 차입, 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단기차입금 등)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차입금

- ▶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 전 분기에 30억원 차입 후 당분기에 연장 → 30억원 기재
 - 단, 이때 10억원은 상환하고 20억원만 연장한 경우 20억원 기재
 - 여신한도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 분기말 실제 잔액을 기재
- ▶ 차입금을 분기중에 상환한 경우
 - 2분기 동안 100억원 차입 후 30억원 상환 → 100억원 기재
- ▶ 은행 등과 여신한도 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당좌차월,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차입)는 직전 분기말 실제 잔액을 기재

(6) 공시양식 12~13 : 유가증권 거래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해당 분기 중 발생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매도가(장부가액)
 - ※ 동일인(포스코)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와 거래 시는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기재

▶ 유가증권이란?

-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 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단 7일 이내의 기업어음은 제외
- ↳ 유상증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7) 공시양식 14 : 계열회사 간 상품 용역거래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국내 계열회사와 해외 계열회사로 나누어 기재 (금융사 = 영업수익)
 - ↳ 양식의 매출액 총계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일치해야 함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
 - ※ 해외수출을 위해 국내상사에게 판매되는 상품(일명 로컬수출)의 경우 당해 매출액이 소속회사의 국내매출로 계상되면 국내매출, 해외수출로 계상되면 해외매출로 기재
 - ※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

(8) 공시양식 15 : 계열회사 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용

- 공시대상 : 사업기간 중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와의 거래내역(상장사는 분기 1회, 비상장사는 연1회)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연매출 또는 매입액의 5%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원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각각 공시(연 1회)

- 공시기준 : 상장사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비상장사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 ※ 공시대상이 되는 개별회사와의 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별 금액이 작성회사 전체 매출액의 1% 미만이거나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합산하여 기재 가능

(9) 공시양식 16 :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자문용역 거래현황

- 공시대상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거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용역대금, 대금산정방식 등을 공시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10) 공시양식 17 :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 공시대상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대상 부동산, 임대기간, 금액 등을 공시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11) 공시양식 18, 20 : 기타 자산거래 현황(연1회, 분기1회)

-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의 거래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에 계열회사 등에게 매도(임대, 리스 포함)한 금액을 처분가액 기준으로 공시
 - ※ 동일인(포스코) 및 동일인 관련자(계열회사 제외)와 거래 시는 매입한 기타자산에 대해서도 기재

(12) **공시양식 19** :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특정기업집단임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권을 의미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까지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실적이 있는 회사(사용료 지급회사, 수취회사)가 공시

(13) **공시양식 21** : 계열회사 간 채권·채무잔액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실물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보증금 잔액(기타 자산의 임대보증금)
 - 금융채권 : 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
 - ▶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 공시기준 : 채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보유한 채권 잔액

(14) **공시양식 22** :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되는 채무보증과 제한이 되지 않는 채무보증
- 공시기준 : 보증회사가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존재하는 채무보증금액

▶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제24조 본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사 제외)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무보증’을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으로 규정

*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의미

-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제24조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라 함
-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회사 간 직접 차입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조합, 개인, 해외계열회사 등에 대한 채무보증 포함)

(15) **공시양식 23** : 계열회사 간 담보제공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 공시기준 :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내역

▶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 채무보증은 인적담보를 의미하며 담보제공은 물권담보와 예금담보 등 물적담보를 의미함

(16) **공시양식 24**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대상 회사의 거래 상대방 회사*
 -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은 20%) 이상인 회사
- 공시기준 :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17) **공시양식 25~26** :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 (연1회, 분기1회)

- 공시대상 : 계열회사 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순환출자현황

(18) 공시양식 27 :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연1회)

- 공시대상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고 체제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19) 공시양식 28 :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분기1회)

- 공시대상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및 의결권 행사 여부

▶ 연도 중 편입 제외된 경우

- 편입통지일, 계열 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
-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계열 편입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기한일까지 해당 사항을 공시
- 신규계열 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 편입일이 포함된 기간의 거래내역 전체를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계열 제외된 회사 또는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 제외 또는 지정 제외된 날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계열제외된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소속회사는 계열 제외된 회사의 계열 제외일 포함 기간의 거래내역을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3 과태료 부과

-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공시기한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69조의2, 시행령 제65조 및 별표3)

(1) 시정명령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미공시·허위공시로 인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소속회사는 공시의무를 이행하거나 공시내용을 정정해야 하고,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수정된 사항을 기업집단 전체현황 공시양식에 반영

(2) 과태료 :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직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3) 과태료 기준 주요내용

위반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함)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1,000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도 적용

• Q&A

Q1 재무현황 작성시, 차입금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1 재무재표상 차입금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외화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등. 사채의 경우, 사채가 차입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기재할 것(사채가 별도 계정일 경우 합산하지 않음.)

Q2 해외계열회사 현황 작성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2 해외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인 소속회사가 작성, 공시 / 해외계열회사 여부는 국내계열회사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30% 이상 최대출자자 또는 실질 지배력 기준) 적용

Q3 합병 후 피합병회사로부터 차입금, 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 이들 금액도 차입 현황,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포함하는지?

A3 피합병회사가 공시대상기간(직전 분기) 동안 차입한 금액, 발행한 사채금액 등은 포함하여 기재하고, 공시대상기간 이전에 차입한 금액, 발행한 사채금액은 기재할 필요 없음.

Q4 모회사가 자회사의 건설이행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A4 공정거래법 제2조 제19호 여신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 함. 단, 해외건설 공사이행보증은 예외조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 함.

Q5 금융·보험사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거래에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대여금(증권사의 신용공여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대여금현황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A5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자금차입·대여현황은 특수관계인과의 순수한 재무적 성격의 자금차입약정에 따른 자금대차거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다른 금융거래에 부수된 대여금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자금대차거래로 보지 않음.

Q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하나?

A6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으며,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공시를 해야 함.

Q7 포스코와 포스코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는 무엇인가?

A7 포스코기업집단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상장사는 분기 1회, 비상장사는 연 1회 공시해야 함. 다만, 포스코는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이므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없음.

Q8 2020.6.25.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2분기 공시의무가 있는지?

A8 계열제외 통지일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따라서 2분기 공시의무가 없음. 다만 계열제외된 회사와 거래한 소속회사는 계열제외된 회사의 제외일 포함 기간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함.

Q9 해외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어디에 공시해야 하나?

A9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의 기타합계에 포함해서 공시를 해야 함.

Q10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은?

A10 사채·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가수금, 제품·원자재 등 수입에 따른 외화단기차입금(Usance, 유산스만 제외), 콜차입·만기 7일 이내 증권 금융 차입, 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단기차입금 등

Q11 소속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공시대상 인지?

A11 소속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할 때는 공시대상 아님. 다만, 소속회사가 유상감자를 당할 때는 공시대상임.

Q12 2/4분기에 국내계열회사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한 후 같은 분기동안 30억원 상환한 경우 차입한 금액을 얼마로 공시해야 하는지?

A12 100억원을 기재해야 함. 분기동안 차입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라도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총 차입금액을 기재해야 함.

● **관련 사례**

포스코 계열회사의 공시 위반 주요 사례

- ① ‘재무·손익현황’에서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
- ②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서 일부 안건 누락 및 ○외 △건으로 안건을 요약해서 공시한 경우
- ③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에서 정관상 도입 및 배제규정에 의거 공시해야 하나 정관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
- ④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내역’에서 일부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현황 누락해서 공시한 경우

☞ 상기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주로 담당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항이 대부분임

【포스코그룹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수감 결과】

- * 2011년 : 29개사 57건에 대해 4,125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 2014년 : 8개사 33건에 대해 5,512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 2015년 : 5개사 19건에 대해 2,503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 2016년 : 1개사 1건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 2018년 : 1개사 1건에 대해 42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 2019년 : 2개사 2건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받음
- * 2020년 : 위반사항 없음
- * 2021년 : 위반사항 없음

※공정위는 2018년부터 3개 공시*에 대해 연1회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27조)
- 기업집단현황 공시(법 제28조)

사례 1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계열회사 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에서 전체 소계와 계열회사 합계의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제재내용 과태료 : 200만원

(6)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거래업종	대표상품	거래내용	거래금액
비금용회사	[가려진]	41225	산업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공사 등	25,014
		41224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	폐수처리설비	20,364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기타설비공사	22,654
		소계			68,032
계열회사간 합계 소계					77,122

사례 2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손익현황'에서 영업외손익을 재무제표상 금액과 다르게 322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함.(재무제표상 금액은 273백만원)

제재내용 과태료 : 300만원

2) 재무현황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계열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현금및 현금성 자산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자산 총계	차입금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비금용회사	1,018	6,513	73,389	79,903	99	1,640	32,628	34,269	39,450	45,633	75

3) 손익현황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계열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비금용회사	15,567	3,099	322	2,609	1

사례 3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계열회사 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에서 공시된 금액과 감사보고서상 수치가 서로 일치해야 하나, 불일치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제재내용 과태료 : 320만원

(5)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 \ 매출회사	계열회사										합계 (매출액)					
	(주)포스코 코템 액	(주)포스코 메이 트	청라 국제 업무 터문 (주)	(주)포스코 포스코	(주)포스코 코피 코건설	(주)포스코 코이 이씨 티	포스 코텍 수강 (주)	(주)피엔 알	(주)포스코 코템 액	(주)포스코 파워 (주)		(주)포스코 하이 메탈	소계	...	소계	
비금용회사	1,176	22	3,938	49,594	1,397	3,297	8	551	20	2,109	10,867	3,001	75,990	-	-	75,980

사례 4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운영현황에서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이 있어 'x'로 기재해야 하나, 'o'로 잘못 기재해서 공시함.

제재내용 과태료 : 200만원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당해연도 4.30. 기준)

계열회사명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비고
비금용회사 (주)포스코 올이디	o	o	-	-

사례 5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이사회 운영현황에서 작성기준일□(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을 착각하여 그 기간동안 개최된 이사회 의 일부 안건을 누락하여 공시하였음.

* 이사회 운영 현황 작성기준 변경 : 전년도 지정일부터 당해연도 지정일 까지

제재내용

과태료 : 500만원

사례 6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계열회사에게 28,50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사는 하였으나,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현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를 누락함.

제재내용

과태료 : 400만원

(3) 계열회사간 유가증권 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 \ 매도회사	계열회사							합계 (매도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A	B	...	C	...	소계		
㉞ B	㉟			㊱			㊲	㊳

사례 7

사실관계

포스코계열회사 △△는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40억원을 만기 후 다시 연장하였으나, 연장한 해당 분기에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에 이를 다시 공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없음'으로 공시를 누락함.

제재내용

과태료 : 200만원

(1)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가. 계열회사로부터 자금 차입현황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해당 없음

III

하도금법 실무

관련부서

구매/본부별 협력계약 담당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하도급법의 특성

-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강행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함.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됨.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중복 적용가능. 단, 위 법 적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
- 하도급법은 국내법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됨.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됨.

2. 하도급법의 체계

2.1. 관련규정

-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는 하도급법과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위에서 필요에 따라 고시하는 각종 고시와 심사지침들이 있음.

① 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고시 지침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당특약 심사지침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2016. 3. 29.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 건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0항 적용)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부당특약 고시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2.2. 구조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장의 준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 의무사항, 수급사업장의 준수 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개조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2.3. 하도급법 상 규제 내용

원사업자	
의무사항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제3조
선금금 지급	제6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제9조
하도급대금 지급	제13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제16조
공급원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

금지사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제12조의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요구	제12조의3
물품 등의 구매강제	제5조	부당한 대물변제	제17조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제8조	부당한 경영간섭	제18조
부당반품금지	제10조	보복조치	제19조
하도급대금 감액	제11조	탈법행위	제20조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제12조		

발주자	
의무사항	법조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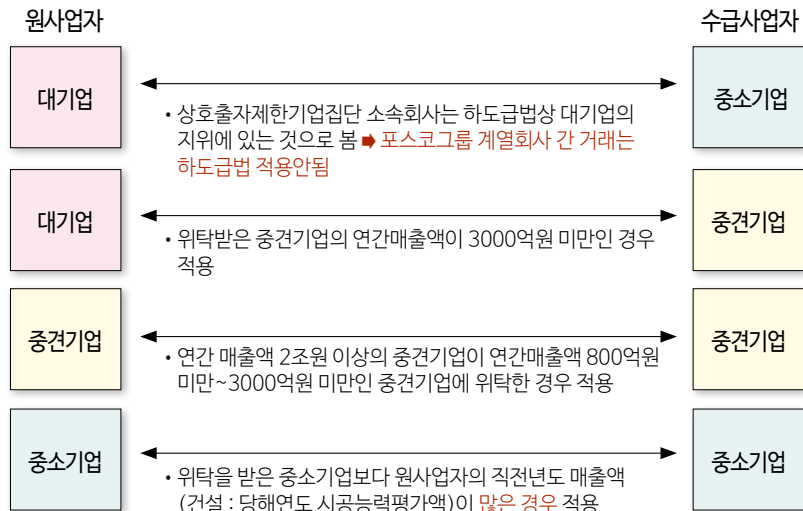
수급사업자	
의무·준수사항	법조문
서류보존의무	제3조
계약이행보증(건설)	제13조의2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제21조

3. 적용범위

3.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요건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함(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사 없이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함.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사가 됨.

①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중소기업 정의

- 제조·서비스 업종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4백억원 이하 ~ 1천5백억원 이하
- 건설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1천억원 이하

■ 중견기업 정의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 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②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②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 유형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용역위탁	10억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45억원 미만

▣ **업무시 주의사항**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 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함.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시 대응 활동이 원활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 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 발생, 조사시 느장 대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됨.

3.2. 법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 하는 행위를 말함.’고 규정되어 있음.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음.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 **‘業’에 관한 해석 (최신 공정위 심결례)**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친 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해당되지만, 단순히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 그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 판단함.

◎ **‘業’에 관한 판단의 기본원칙**

- 원사업자 자신의 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
- 구체적인 범위는 각 범위 고시 내용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참조
- 건설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넓게 해석하는 경향
- 주요 제조 품목,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표준산업분류표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① **제조위탁**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 *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

-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함.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함.
-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임)가공
 - ☞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간주

■ **사업자가 건설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위탁
-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 없이 규격, 품질 등을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제조위탁하는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제조위탁
-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특별히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건설자재 : 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 규격 : 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② **수리위탁**

- 주문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
 - 대상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수리를,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수리를 다른 사업자에 위탁
-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사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등의 수리를 사내에서 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수리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함.

※ 만약 사내에서 행하여 지지 않고 전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기계 수리는 해당 사업자의 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3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건설위탁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業에 따른 해당 환경전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에너지관련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업법」 상의 공사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4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의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

는 성과물

-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예 : 디자인, 상표, 설계도면 등)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성과물

■ 역무의 공급위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 등의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용역위탁의 범위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법,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 시설을 포함함)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조정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함)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함)의 운영 및 유지 보수 활동을 포함함) 등의 활동
 -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티브이,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 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 「엔지니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한자)나 그밖의 관련 자료(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및 특정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 공급을 포함)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을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 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 편성, 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방송법」 제2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
- 티브이,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 편집물(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영어)을 포함).
- 전자상거래 콘텐츠

3.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 도형, 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함)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 편성, 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 「상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 설계도면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 번역물 등의 작성
-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

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 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 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관련 사례

하도급법 적용범위와 관련한 사례

법원 판단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그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원단이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이거나, 제조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위탁에 해당함. (2003누5602판결)

법원 판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샘플을 제시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샘플을 만들어 사전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원사업자가 제품의 생산과 강도를 미리 지정한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함. (2007누31661판결)

법원 판단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보증 등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2007누 31661판결)

법원 판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중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레미콘은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판시. (2018누52756판결)

법원 판단 철근 주문 당시 견적서 및 명세서상에 표준화된 철근의 품명과 규격을 적시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더 상세하고 특화된 사양서, 도면, 시방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의하여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8누52756판결)

법원 판단 기술사양서 중 일부 제품의 사진에는 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 등이 새겨져 있고, 해당 업체의 카탈로그에는 각 제품 군별로 일정한 사양이 제시되어 있어 기성품 내지 범용품을 필요에 따라 선택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사양을 지정하여 수리장비의 제조를 위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018누38378판결)

법원 판단 해외 브랜드사의 고유 사양 및 기술에 의하여 제작, 생산되었고, 범용성 있는 기성제품은 하도급에서 규정한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017누46556판결)

법원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관한 것이고, 일반건설업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원사업자로서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사업자와 전문건설업자 사이의 건설위탁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위탁에 해당함. (2006누2420판결)

4. 법 적용대상 기간

4.1. 관련규정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 (하도급법 제23조)

◎ 거래종료일

-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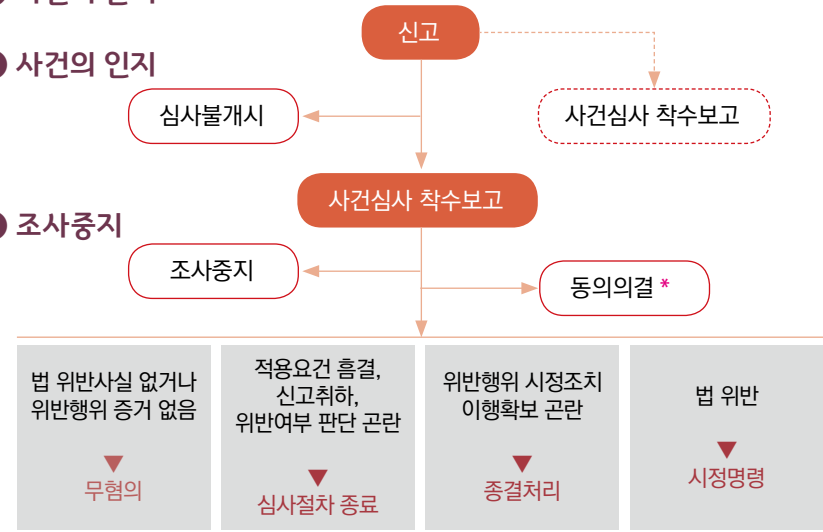
5. 위반시 제재

5.1. 하도급 사건 처리절차

1 사건의 단서

2 사건의 인지

3 조사중지



4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하도급법 실효성확보수단)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실익 없음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악질적이나 상습적인 경우	지나치게 악질적이나 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등
무혐의	공표명령	과징금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고발

* 동의의결(제24조의9)

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자 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법위반 여부 판단을 하지 않음)

5.2. 법 위반에 대한 주용제재

구분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시정명령, 권고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법 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기술유용 행위는 최대 5억원까지 부과) - 상습 법 위반자 명단 공표 (법 위반 시정권고 3회 이상 사업자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및 영업정지(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처분 위반, 허위 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 조사 방해, 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 수급사업자 자료 제출 방해 : 사업자 5천만원 이하, 개인 5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당경영간섭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자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 고발(법 위반 3회 이상 및 벌점 4점 초과)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민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 책임 -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 보복조치 ▶ 3배 손해배상 책임 ①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감액 금지) ② 부당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③ 부당반품 금지 ④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벌점부과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함).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음.

부과기준		점수
경고	서면 실태 조사	0.25점
	신고 및 직권 인지	0.5점
시정권고나 법 위반 자진시정 및 향후 재발 방지 명령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제19조 위반(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사용, 보복조치)	2.6점
고발		3.0점
	제19조 위반(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사용, 보복조치)	5.1점

◎ 감경기준

· 벌점의 감감은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함.

※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

유형	경감 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90% 이상 : 2점 70% 이상 ~ 90% 미만 : 1점
현금결제비율	100% 이상 : 1점 80% 이상 ~ 100% 미만 : 0.5점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	최우수 : 2점 우수 : 1점
공정위 모범업체 선정	3점
협약평가결과 (동반성장협약, 평가양호 이상)	최우수 : 3점 우수 : 2점 양호 : 1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활용 (대금 직접 지급)	50% 이상 : 1점 50% 미만 : 0.5점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공정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 양벌규정

■ 규정내용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함. (법 제31조)

■ 규정취지

- 양벌규정이란, 법 위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함.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나 수행능력이 부인됨.
- 따라서, 법인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음.
- 하도급법처럼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특히 사전에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4항	100	250	500
나. 법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① 원사업자 ②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3항	1,000 100	2,500 250	5,000 500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5항	50	75	100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 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2,000 200	5,000 500	10,000 1,000
마.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2,000 200	5,000 500	10,000 1,000
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2항	10,000 2,500	15,000 3,500	20,000 5,000

◎ 벌금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30조 제1항)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규정을 위반한 자
 - 부당한 특약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를 위반한 자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감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부당반품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자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자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규정을 위반한 자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복조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법 제30조의2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Q&A

Q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A1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도급법상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괄 재하도급 이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음.

Q2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이 공장 증축을 위해 중소건설업자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지?

A2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자격 있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해당 위탁은 도급계약일 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아님.

Q3 제철소 조업 및 정비작업 수행 외주파트너사 중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여부?

A3 외주파트너사 중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포장, 가공업체 등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나,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운송 등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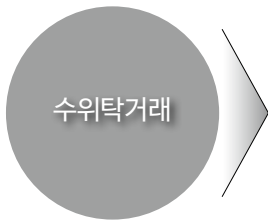
6.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6.1. 제정 배경 및 상생협력법 적용대상

◎ 상생협력법 제정 배경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반성장하는 안정된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함

◎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의 의미



- 위탁자 범위 : 6가지 유형(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
- 수위탁거래 범위 : 6가지 유형(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 법령상 자신의 업(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아닌 사안까지도 상생협력법 적용 될 수 있음

구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	대기업/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간 모든 하도급거래	대기업/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모든 위수탁 거래 - 매출액, 종업원수 제한 없음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거래 관계	• 7가지 하도급 거래만 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원사업자</th> <th>수급사업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조위탁</td> <td>제조</td> <td>제조</td> </tr> <tr> <td>판매</td> <td>제조</td> </tr> <tr> <td>수리</td> <td>제조</td> </tr> <tr> <td>건설</td> <td>제조</td> </tr> <tr> <td>수리위탁</td> <td>수리</td> <td>수리</td> </tr> <tr> <td>건설위탁</td> <td>건설</td> <td>건설</td> </tr> <tr> <td>용역위탁</td> <td>용역</td> <td>용역</td> </tr> </tbody> </table>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 30가지 유형의 위수탁 거래 모두 포함 (예 : 제조업자의 공사위탁, 용역업자의 제조 위탁 등)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준수 사항	• 19개 준수사항 부당반품,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관세 등 환급액 지급, 탈법행위, 선금금 지급의무	• 19개 준수사항(하도급법과 유사) -기술자료 요구																					
제재 조치	1.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권고/명령), 공표명령, 벌점부과, 교육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3배 이하) 2. 형사적 제재 -공정위 전속고발, 시정명령 불이행, 양벌규정	1.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권고/명령), 공표명령, 벌점부과, 교육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통보 2. 형사적 제재 -시정명령 불이행, 양벌규정, 의무고발 요청																					

■ 위탁기업, 원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비교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서면교부의무	• 약정서 교부 의무(21조)	• 서면교부의무(3조)
서면보관의무	• 서류비치 의무(39조, 시행규칙11조)	• 서면보관 의무(3조9항)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 동종, 유사품의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결정 금지(25조1항3호)	• 동종, 유사품의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 금지(4조)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 지정 물품구매강제 금지(25조1항5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 지정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5조)
선금금 지급 의무	-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6조)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물품 수령 거부 금지(25조1항1호전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수령, 인수거부 금지(8조)
부당한 발주취소 금지	• 제조 의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기피하는 행위(25조1항10호)	• 제조 등 위탁 후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음에도 위탁 취소 금지(8조)
발주 감소 또는 중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 발주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 중단 금지(25조1항7호)	-
부당한 반품 금지	-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10조)
검사의무	• 객관적, 타당한 검사기준에 따라 공정, 신속한 검사 • 불합격 사유 서면 통보(23조)	• 객관적,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 •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통지의무(9조)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납품 대금 감액금지(25조1항1호 후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 정한 대금 감액 금지(11조)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저 등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금지(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25조1항12호) • 기술자료 유용 금지(25조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12조의 31항) • 기술자료 유용 금지(12조의3 3항)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치)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24조의2) • 기술자료 임치 요구 수탁기업에게 불이익 제공 금지(25조1항13호)	-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25조1항13호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18조2항3호)

6.2. 공정화지침 상 위수탁거래 관련 예시

◎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 것

-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PB상품의 제조위탁)
-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수리 후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등 사실상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위수탁거래에 해당
-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을 중소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기초작업의 이행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이행에 착수하였을 경우
-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명령 하에 파견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절차-조사개시

사유	내용	참고사항
신고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10억원 미만
직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부장관은 특정사항*에 한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 가능(상생협력법 제27조) • 중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직권조사 가능(지침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1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2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3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5조)
조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청가능 • 특정사항에 대해 조정신청 가능 	• 상등 +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4조의2)

■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절차-행정제재

방법	내용	참고사항
개선요구	•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요구하여야 함(지침 제11조)	
시정명령	• 조정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침 제19조)	
시정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 중 하나 해당할 경우 ① 피조사인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공정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는 경우(지침 제19조) 	

7.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7.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① 서면발급의무(제3조)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반성장하는 안정된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함.

▣ 위반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또는 변경된 위탁 수행 내용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위탁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나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구체적인 계약서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 개념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방법	내용	참고사항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침 제22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 시정명령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상생협력법 제41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권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공표명령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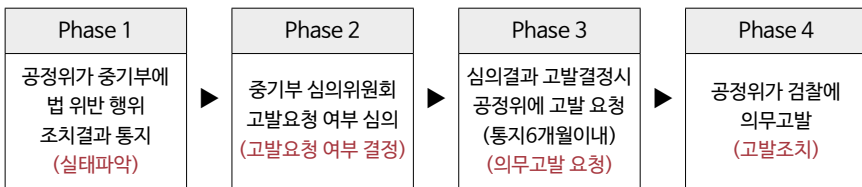
◎ 의무고발 요청제도

■ 제도개요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항 통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제도(2014.1월 도입)

→ 근거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2조

■ 처리절차



- 심의위원회 구성(7인 이내) :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위원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기타 중기부장관 위촉인(교수 등)

◎ 원칙

■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시 제외)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시에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

-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거래 단계별 발급 서면 종류

단계	발급 서면의 종류
거래 개시 (하도급 제3조)	①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제1항)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거래 과정 (하도급법 제8-16조)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제2항)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제2항) ⑤ 감액서면 :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 기재(제11조 제3항) ⑥ 기술자료 요구서 : 기술자료 요구 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대가 등 기재(제12조의3 제2항)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증액 또는 감액) 통지서(제16조 제2항)

◎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하도급법 제3조 제3항)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이 가능하나,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해당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 제3조 제4항)

◎ 사전 서면발급의무 예외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함.
- 원사업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함.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이메일 또는 개별계약서 형태로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상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발급은 적법한 서면 발급임.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임.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 등에 비추어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발급임.
- 2종 이상의 계약서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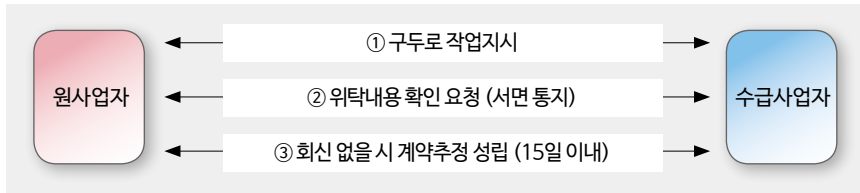
② 서류보존의무(제3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단, 기술자료 관련 서류(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등)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함.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1	·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3조 1항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3조 6항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8조 2항
4	·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9조 2항
5	· 감액 서면	하도급법11조 3항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7년)	하도급법12조의3 2항
7	· 계약변경 내용 통지서	하도급법16조 2항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6조1항 2호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	시행령6조 1항 3호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6조 1항 4호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6조 1항 5호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6조 1항 6호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6조 1항 7호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시행령6조 1항 8호

◎ 하도급계약추정제(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제6항)

-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제3조의5) 2023년 1월 12일 시행

- 국가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을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1. 입찰금액
 2.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3. 유찰된 경우 유찰 사유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함.
-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함.

Don't

- *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함.
-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됨.
-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음(허위서류 보존).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함.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함.

공정위 판단 삼성중공업의 계약 시스템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한 사실이 발견 되지 않았으나, 전자 서명 완료일과 최종 공사 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계약서 작성시점에 이미 작업이 시작된 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서면 지연 교부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함.(서면발급 의무 위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총 과징금 36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사례 2

사실관계 대림산업은 2015.10.7부터 2017.12.27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 등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에서 388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하였음.

또한 계약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음.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해당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

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4~388일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함. 또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대림산업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2019.8.30. 2018건하1299)

사례 3

사실관계 성림건설은 2004.5.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5.2.1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음.

법원 판단 하도급 거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09.9.13 선고 2008누2554판결(확정))

사례 4

사실관계 강림중공업(주)는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WELDING BODY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단가 등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계약서면을 발급하였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CONVECTION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함.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

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로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사례 5

사실관계 자동차부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제조위탁 품목이나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음.

법원 판단 원고가 추후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마감내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이 차질 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5누32195판결)

사례 6

사실관계 D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공사를 추가 위탁하면서 추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일부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함.

법원 판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함. 원고가 추가공사를 긴급하게 시행하여야만했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추가 공사 내용이 기존 공사 내용과 유사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8누46386판결)

사례 7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2.04.21)

사실관계 (주)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미발급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주)삼태사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

사례 8

법원 판단 발주사로 금형제작을 위탁하고 추후에 원발주자의 결정가액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정하는 관행이 있어 이에 따른 행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 (2003누17773판결)

사례 9

법원 판단 하도급거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로서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2008누 2554판결)

• Q&A

Q1 계약서 서면교부 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A1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Q2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2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음.

Q3 거래 당사자 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A3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Q4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A4 전화 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미교부로 됨.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함. 참고로 이메일을 통한 주문 등도 서면미교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Q5 가단가는 금지되는가?

A5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함.

Q6 계약체결 후 제품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추가된 물량 또는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면 교부의무에 위반되는가?

A6 향후 추가된 물량 또는 설계등이 변경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에 서면미발급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3 선급금 지급의무(제6조)

▣ 위반유형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을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개념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함.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 함.

◎ 원칙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지급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함.

◎ 적용기준

-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내역(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 지급

예)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콘공사, 조경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부문에 30%, 철콘공사부문에 20%를 선급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 금액의 30%,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됨.

* 용도를 지정받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 관련된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예) 발주자가 용도 지정 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련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의 법정 지급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선금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으로 지급기준 공정위 고시
[지연이율 연15.5%(2015.7.1~), 어음할인율 연 7.5%(2012.8.21~)]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면 됨. 이와는 반대로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도 원사업자의 선금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 계약서상 선금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 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금금 지연 지급이 가능함.
-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금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선금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금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선금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선금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법상 선금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야 함.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금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주)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 1,150만원을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기일인 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케이에이치피티에 향후 금지명령과 임원 담당자에게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 또한 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사례 2

사실관계 상원종합건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94일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한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선급금 지급비율 미유지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하도급법 제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 Q&A

Q1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1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래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바,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2 1996년 4월 10일에 발주자로부터 본사건물 신축공사를 100억원에 도급받아 1996년 5월 1일에 일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10억원에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현금 10억원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은?

A2 ① 지급기일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기 이전인 1996년 4월 10일이라면 건설위탁일인 1996년 5월 1일부터 15일 이내, 즉 1996년 5월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이후인 1996년 5월 10일이라면 1996년 5월 25일까지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② 지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공사비의 일정률로 지급받았을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도 10%인 1억원을 지급해야 함.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내역별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Q3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를 지급해야 함. 미지급 선급금에 대한 화의채권 귀속여부는 화의법상 문제로 별도 판단 필요함.

Q4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선급금 20%를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한 결과, 발주처와 계약한 도급금액의 120%일 경우 선급금 지급은?

A4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하도급 금액에 발주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4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제7조)

● 개념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날(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적용기준

▶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원사업자 입증책임)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 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등

참작 사유

- 내국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물품매도확약서가 필요하므로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조위탁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은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없음.
-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됨.
- 원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법정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원사업자는 원신용장이 개설되는 대로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이유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못했으나 이를 분명히 입증해 준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15일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준 경우

구 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법
내국 신용장 개설	발주서(제조위탁)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하도급법 제7조
	매도확약서제출(Offer Sheet)		
	내국신용장 개설(Local L/C)		
	물품수령	즉시(통상 10일 이내 인수증 교부)	하도급법 제8조
	인수증교부		
관세 환급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 제출	60일 이내 관세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완제품 수출		
	수출자의 관세 환급	15일 이내 관세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하도업체에 관세 지급		

◎ 하도급법상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 환급에 대한 흐름도

- 관세 환급액을 법정기일(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지연이자(연15.5%)부담

• Q&A

Q1 수출용 물품을 제조위탁시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이 법정기일인 15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는지?

A1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음. 단, 수급사업자가 적기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서도 원사업자는 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는 대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

Q2 제조업자가 수출용 제품의 부품을 부품제조업자에게 1995년 10월 1일 제조위탁하고 1995년 11월 1일 부품제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이후 부품제조업자는 1995년 12월 1일 목적물을 납품하였으며, 제조업자는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1995년 12월 20일 부품제조업자에게 물품수령증명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 간에 적법한 하도급거래를 하였는지?

A2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1995년 10월 16일까지는 내국신용장(Local L/C)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에도 1995년 11월 1일 개설해 준 행위는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7조에 위반임 다음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있어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 관련 거래인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 후 즉시(10일 이내 검사 완료하고 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소한 10일 초과하여 교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임.

Q3 수급사업자 중 무역금융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거래를 구매승인서 거래로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A3 하도급법 제7조에서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 승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 즉, 원칙적으로 구매승인서로 내국신용장을 대신할 수는 없음.

5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제9조)

■ 위반유형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먼저 검사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있음. 또한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해야 함.

◎ 원칙

①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함.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② 검사결과와 통지의무

• 통지기간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함.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 통지의무의 예외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③ 검사비용문제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검사 결과 통보 의무의 예외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의 예외는 다음과 같음.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검사와 반품의 관계(대량 납품하는 경우)**
 -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납품받은 후 제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함.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 **업무상 유의사항**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함.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검사 결과 통보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구두통지는 법 위반임.

Do

-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화시켜야 함.
- * 목적물 수령 후 수령증서와 함께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Don't

-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음.
-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을 이유로 감액을 하지 않음.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피심인(엔에스인터내셔널)은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 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음.

또한,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 후 물품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사례 2

사실관계 검사결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검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 사안에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2012서 제0967)

사례 3

사실관계 2004년 9월15일 신고인에게 강원도 원주시 정산지구의 '농업용 저수지 제당의 그라우팅 공사'를 위탁 후, 2004년 12월 14일 신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하도급계약상의 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5일 발주자인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자, 감독관이자 발주자인 원주지사는 준공검사를 요청 받은 당일 저수지제당의 누수를 측정한 결과 측정시점에서의 누수량은 허용 누수량 범위 내로 치수되었음을 인정하나, 제당의 수위가 공사 착공 전 수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후 수위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인 검토의견을 피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의 검토의견은 기성금 지급조건인 준공인가가 아님을 이유로 기성금 8천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성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은 그 승인을 위한 검사시점, 검사시 제당 수위, 허용 누수량 및 그 측정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조건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 Q&A

Q1 지속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월 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의 검사결과를 해 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1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는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지만, 검사결과와 통보는 실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주어야 함.

Q2 건설위탁관계에서 공사를 목적으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한 뒤, 인수증 및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목적물 수령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A2 목적물의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함.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목적으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한 후 원사업자로부터 인수증 및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기 사실이 입증되면 하도급법에 의한 목적물의 수령으로 간주됨.

Q3 수급사업자가 기성으로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 증빙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검사를 하여도 무방한지?

A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Q4 원사업자가 완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중 불량품을 발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반품과 교환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 목적물의 수량이 많아 샘플링 검사를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장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요구가 가능하나, 지나치게 장기간이 경과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함.

Q5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운영계약서의 내용이 하도급법 위반여부? (VMI운영계약은 사용량에 따른 지불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

A5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목적물 수령 의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우 물품을 제조하여 제때 납품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제조경비, 보관비용 등 관련 제비용을 적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따라서 하도급법상 목적물의 수령일은 원칙적으로 VMI 창고에 물품이 실제 입고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사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검사,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Q6 포장된 상태로 위탁상품을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이에 하자를 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쌍방 합의하에 납품 후 발견되는 불량을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서면 통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와 납품 이후에 발생하는 불량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불량률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6 목적물 인수시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합격한 것으로 보되, 판매단계에서 발견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해결 방법을 정해 약정할 수 있을 것임.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한 약정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다른 담보수단이 있는데도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을 초과하여 납품대금에서 유보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음.

Q7 납품받은 부품 중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A7 보상비용 청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

Q8 건축물 준공 후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미정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8 건설 위탁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수급사업자의 검사요청을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임.

6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제13조)

▣ 위반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개념

①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시 기준일이 됨.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함.

②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봄.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목적물 인수일은 정산시점에 불구하고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을 목적물 인수일로 봄.

◎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 지연이자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함.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 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함.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황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함.**

◎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함.
-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 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아니됨.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제13조의3) 2023년 1월 12일 시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당사는 POSCO기업집단 소속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업무 관련부서는(IR, 구매, 재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대림산업은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건설공사’ 관련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물문화관 설비공사’ 등 5건의 건설위탁을 한 후 2017.12.12 목적물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493,06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대림산업은 2015.6.16부터 2018.5.31까지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789,97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목적물 등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법정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89,97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함.

사례 2

사실관계 한화에스엔씨는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 계약인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 000이 본 계약 구축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과 연계되어 개발되는 이 사건 추가 개발 용역건도 용역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공정위 판단 ① 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이 발주사로부터 추가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50,798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을 위탁하기 위하여 000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본 계약 구축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000이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양측의 담당자협의를 통해 000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위 2건의 추가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상에는 000의 목적물 납품에 따라 피심인이 검수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000이 납품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에 대한 검사내역기록을 보면 투입인력(김OO, 김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 완료여부에 'Y'라고 표시하여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터페이스 추가개발 용역'건도 이 건의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5.1. 개발을 시작하여 2012.5.24.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2건의 추가개발이 본 계약 용역과 연계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000이 별건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개발 용역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000이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보고한 주간업무보고서(2013.2.13. 및 2013.3.6. 보고자료)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한화에스엔씨는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쳤다면 본 계약 구축용역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72,60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음.

사례 3

사실관계 ㈜태아건설은 2009년 9월 25일에 '경인 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쇠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엔에게 제조 위탁한 후 2010년 6월 8일까지 쇠석골재 82,704m³, 혼합골재 54,024m³를 납품 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의 하도급대금 7억 1,3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혼합골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함.

사례 4

사실관계

(주)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 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주)한국토건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수한 목적물 관련 하도급대금 252억 6,034만원 중, 2억 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4,7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함.

공정위 판단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일부를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한 것은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사례 5

사실관계

포스코ICT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브라질CSP 제철소 관련 전자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 위탁하고, 2014년 6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

도급대금 53,918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 업체에게 제조·건설·용역 위탁을 한 후,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907,669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8,61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포스코ICT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됨.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함.

사례 6

사실관계 A는 C공사 중 일부를 B에게 건설위탁하였고 B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공사 도중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근 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비가 들었고 공사 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위 보상비와 지체상금 등을 합한 액수가 하도급대금을 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사례 7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1.12.30)

사실관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2016. 1.~2019. 3.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어음 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1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190개 수급사업자에게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Q&A

Q1 하도급법상 기간계산 원칙, 기산일 결정,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 기준은?

A1 기간계산 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시작일을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고 해당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 기산일의 결정,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계산예시 목적물 인수일이 2010년 3월 14일인 경우, 시작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10년 3월 15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2010년 5월 13일, 기산일은 2010년 5월 14일이며, 이 날부터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가 적용됨.

Q2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의 판단기준은?

A2 [제조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 [건설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검사가 완료된 날 [용역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Q3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가?

A3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Q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에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일수 30일 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A4 당사자 간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하도급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단, 당사자 간의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 법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임.

Q5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가능한 어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할인가능 어음'이란 어떤 어음을 의미하며, 할인가능 어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A5 ·할인가능 어음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해 어음할인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

-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 보험업법에 의해 성립된 생명보험회사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리업무 취급기관
- 할인가능 어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자 : 원사업자

Q6 Plant 제어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 설치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 중 대금 지급조건이 선금금 20%, 기성금 70%, 준공 완료 후 10%로 되어 있음을 들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종합준공이 안되었음)로 시운전이 불가능함에도 15%의 공사대금을 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보호책은?

A6 이 경우 준공의 성격이 단순히 납품, 시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사가 계약을 통해 여타 공정의 공기지연도 예상하면서 모든 공정이 완료된 후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면 시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을 유보하고 있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준공금 10%를 초과한 15%를 유보하고 있다면 그 초과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Q7 해외 Project를 Turn-key 수주할 경우 물품납품시 대부분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5~15%를 유보하고 Project 종합준공 후 유보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원사업자가 국내업체(하도급법 적용대상)에게 상기의 대금지급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체결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

A7 발주자가 일정 비율의 공사대금을 Project 종합준공 이후로 유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전가하여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 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목적물의 성능

을 종합 준공 이후라야 알 수 있거나 시운전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정당한 이유로 검사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당해 업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Q8 현금성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여부?

A8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다더라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Q9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부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A9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하나,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 다만, 하도급계약이 단독명의로 체결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명날인한 공동도급사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

Q10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예외조항으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약정'과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이 인정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A1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라 함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유정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당해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업종의 상관행 및 경제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 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라 하겠음. 상기 예외규정의 적용은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Q11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지급 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지연인지?

A11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은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7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제13조의2)

▣ 위반유형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으로 현금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약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원사업자가 자체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예 : 원사업자 부모사)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는 그 증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개념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13조의2 제1항)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13조의2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13조의2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 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법 제13조의2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13조2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

건설하도급 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법 제13조2 제3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봄. (법 제13조의2 제4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법 제13조의2 제5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6항)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 또는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 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7항)
 -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9항)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법 제13조의2 제10항)

◎ 적용기준

-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공사금액이 1천

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음.

◎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선급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계약금액}-\text{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계약금액}-\text{선급금}]/\text{공사기간9월수}) \times \text{기성금 지급주기(월수)} \times 2$$

◎ 지급보증 의무면제 사유

-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신성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인 원광이앤지(주)에게 삼성SDI 전지동 증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는 원광이앤지(주)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또한, 자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 Q&A

- Q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면 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면제되는지?
A1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상호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Q2** 공제조합의 지급보증 한도 초과로 지급보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급사업자도 직접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지?
A2 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다만 직접 지급에 관한 조건부 합의 등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 의무가 조건부로 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 Q3** 원사업자가 하도급 금액의 20%로 계약이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A3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이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상 계약이행보증금을 10% 초과하여 요구한 행위만으로 당연 위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거래관행, 공사 성격,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 판단 필요.
- Q4** 공제조합의 지급보증 한도초과로 지급보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급사업자도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지?
A4 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다만 직접 지급에 관한 조건부 합의 등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 의무가 조건부로 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Q5 원사업자가 하도급 금액의 20%로 계약이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A5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이행보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상 계약이행보증금을 10% 초과하여 요구한 행위만으로 당연 위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거래관행, 공사 성격,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판단 필요

Q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공동도급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지?

A6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하도급계약이 개별 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

《공동도급 공동 이행방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주체는 개별 원사업자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여부를 판단

Q7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는?

A7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없음. 그러나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원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8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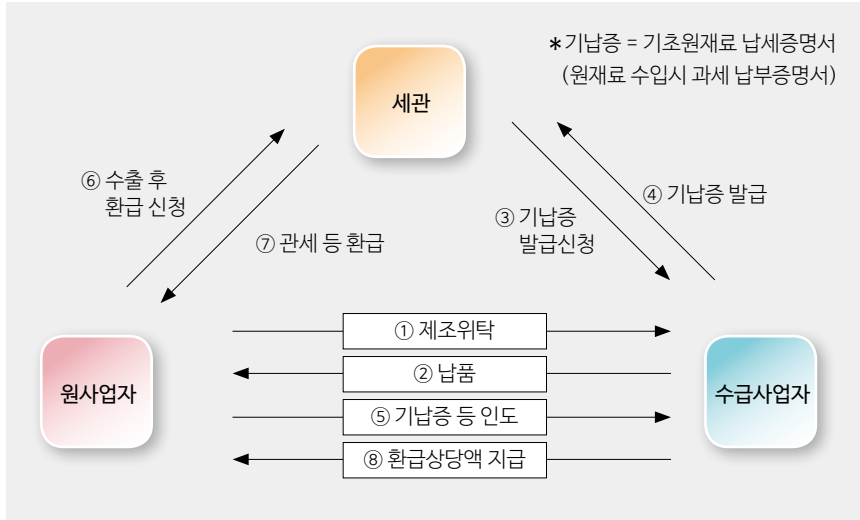
◎ 개념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법 제15조제1항)
-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15조제2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법 제15조 제3항)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함
-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 (지연이율 : 연15.5%)

[관세 등 환급절차 흐름도]



• Q&A

- Q1**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재는?
- A1** 하도급법상 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 Q2** 관세환급의 기초자료인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를 협력업체의 지연접수로 인해 해당 자재 또는 제품의 매출발생 및 관세 환급처리 종료로 관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미지급 사유가 되는지?
- A2**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세 환급에 필요한 기납증 등을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그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제16조)

■ 위반유형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률이 5% 미만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함.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함.

● 조정절차

- ① 조정내역 통지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음.
- ② 변경계약 체결
 - 그 다음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함.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함.

③ 조정금액 지급

-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조정기준

- ①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②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함.
- ③ 총액지급 방식
 -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 미만으로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위법함.

● 조정방법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여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다만, 품목별 조정방법

의 경우 해당 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로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로 해야 함.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
-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함.
- *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30일이 초과되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대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Don't

-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조정을 특약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에스케이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11.25., 2011.10.6. 및 2011.12.8. 총 세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므로,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000(주)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에서 437일 초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0000 주식회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은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사례 2

사실관계 한진중공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증액조정을 받았으므로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법정기한을 14~159일 지연하여 조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조정한 것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 및 비율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였고, 신규품목이 추가되어 당사자 간 협의를 필요하였으며, 수급사업자 스스로 변경계약을 추후에 체결할 것을 요청하거나 피심인의 대금 조정 관련 공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회신이 지연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지연조정행위는 피심인이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추가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조정 받은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원하는 증액금액을 신청하라고만 통보하는 등 피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Q&A

Q1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방법 및 시기는?

A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원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계약시점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물가변동을 적용해 주는 기준시점이 하도급계약 시점보다 앞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음. 또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부터 물가 변동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이 원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이 적용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시 그 만큼을 공제할 수 있음.

Q2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신발장, 씩크대 등을 제조위탁시, 위 시설물을 제작납품만 하고 원사업자가 설치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의무가 있는지?

A2 하도급법상 물가변동분 반영 의무는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위탁물을 제조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적용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함.

Q3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A3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해주지 않아도 됨.

Q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 부분과 신규 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A4 기존 하도급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부분 우선 당초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률(설계변경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

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신규 공종부분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Q5 전문건설업체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시공 중인 아래 공사계약의 위법성 여부
는?

A5 · 하도급내역서에 공과잡비가 10% 적용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시 5%만 적용한다'는 내용

- 견적내용 중 도급이 없는 공종은 차후 설계변경에 반영되더라도 기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규정하고 특기사항으로 당해 년도에는 물가변동 대금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과잡비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5% 제한은 위법임.
- 동 특약사항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계약되었다면, 동 조정 기준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해당분에 대해서는 대금조정을 해주어야 함.

Q6 원사업자의 지시로 투입비와 간접비 5.8%를 지급받기로 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6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10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제16조의 2)

▣ 위반유형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 조정 관련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 공급원가 외의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됨.
-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조정신청일부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부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Fast Track)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 ① 협의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 ② 조정금액이 상호 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조합의 공급원가조정협의

-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합도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 협의의 가능성**.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수급사업자가 조정신청에 따른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물량감소 등의 위험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도입(조합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 조합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

- 조합의 조정상대 원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조정협의요건(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
 - 기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계약기간 60일 이내 포함]
 - 변동 기준
 - 1)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계약기간 60일 이내 포함]
 - ①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 10퍼센트
 - ②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 ③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함.
 - ④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⑤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2) 계약기간 60일 이내(사유 발생시 언제든지 대금 조정 신청 가능)
 -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후 원사업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 신청가능 조합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제외)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으며,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됨.
-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으면 안됨.

-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여서는 안됨.
- *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됨.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 지연시 영업활동이 심각히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Q&A

Q1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원도급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 인지?

A1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위법임.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사유가 공급원가의 변동이 아닌 저가수주 등으로 인한 적자보전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협의 신청 내용 검토 결과 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7.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①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 위반유형

- ①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됨.
-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③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됨.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함.
- ④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의 한 유형임.

⑥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단,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 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함.

⑦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 예를 들어, 건산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⑧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화재 전염병 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을 말함.

⑨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함.

⑩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일부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에게 위탁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을 받을 권리, 법 위반 하였음을 관계 기관에 신고, 원사업자에 대한 조정신청 및 하도급부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함.

⑪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말함. 또한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됨.

⑫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및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요금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함.

⑬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및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함.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됨.

⑭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이라고 봄.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

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계약 해제, 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Don't

-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함.

Q&A

Q1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누락, 견적착오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하는가?

A1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과실(견적누락, 착오)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함.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위반유형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임.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② **협조 요청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법 제4조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배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함.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 납기,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함.
-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관련 전문분야

행위는 위법함.

⑤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법 제4조 제2항 제5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함.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6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임.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7호)

-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⑧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법 제4조 제2항 제8호)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음.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

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 (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함.

경쟁 입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먼저, 최저 입찰금액이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찰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함. 이때의 입찰예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 실제로 입찰 결과, 실행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사전 고지를 하였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외에도 낙찰자를 선정 후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함.

◎ 개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법 제4조 제1항)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법 제35조 제2항)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판단기준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①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 여부임.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봄.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함.
-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됨.
-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음.
- * 공정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음을 회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함.
-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함.
- *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Don't

-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함.
-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케이티씨건설은 신고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2. 10. 5 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에 해당하며, 자신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96,221천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됨.

사례 2

사실관계 현대모비스는 13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기 위하여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심의입찰을 실시하였고, 심의입찰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심의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쟁입찰의 개념적 표시를 갖추었는지 여부(객관적 요건)와 입찰 관계자들이 이를 경쟁입찰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주관적 요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최고점수를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가를 낙찰가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추가협상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낙찰가를 결정한 행위는 당연 위법함.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함.

사례 3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리오 등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하(0.9%~29.9%)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25억원의 손실을 입게하였음.

법원 판단 기아자동차는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관하여 내부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화된 납품 대금을 전액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되었음.(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14296판결)

사례 4

사실관계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은 2016.1.1부터 2016.6.4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선박엔진 관련 부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 단가 대비 0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2016년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률적으로 00%의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 및 입찰 통보 공문을 통해 종전 대비 00% 인화된 구매목표금액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입찰이 유찰된다고 적시하였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

는 경우에 해당함.

사례 5

사실관계 현대엔지니어링은 2006년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Shelter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예가 내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 업체로 결정한다'고 현장설명을 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예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현대엔지니어링)은 사전에 재입찰을 고지하였고, 예가기준을 초과한 최저 견적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피심인이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관리 규정에 '입찰실시 전에 예가를 확정하여 밀봉하여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견과 관련하여 예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재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사례 6

사실관계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 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보다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음.

공정위 판단

선체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생산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일 때, 능률 등을 반영하여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음. 이는 원인 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가로 삭감된 것임.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 조치함.

사례 7

사실관계

포스코ICT는 2014년 7월 11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광양 5고로 DCS H/W 1식' 등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선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함,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 의서 등을 통해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지하지 않음. 포스코ICT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입찰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유찰시키고, 재입찰 과정에서 기준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후,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몇차례의 유찰에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 입찰가보다 5,000천원~416,250천원 낮게 계약금액을 결정함.

공정위 판단

포스코ICT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자신이 책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제출하는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시키고, 기준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자 등을 선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입찰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법 제4

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함.

사례 8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2.01.24)

사실관계

(주)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

공정위 판단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세진중공업의 대금결정은 부당하기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을 한 세진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897백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 고발 조치

Q1 정부발주 공사시 저가 하도급 심사의 대상이 되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A1 하도급법의 규정은 수의계약 시에는 직접공사비 이하, 경쟁입찰 시에는 최저가 투찰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협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급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도급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통상적 지급되는 대가' 이하인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함.

Q2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가?

A2 합리적인 원가절감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당된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통상 장기적인 제조 납품의 경우 거래 초년도보다 이후에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Q3 경쟁입찰 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A3 최저가 금액이 실행예산보다 초과함을 이유로 네고를 통해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체결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함이 타당함.

Q4 물량을 5배 이상 많이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도 무관한지 여부?

A4 하도급단가는 그 물량의 대·소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량이 5배 되는 타사업자의 단가기준으로 계약변경 강요시 위반소지 있음.

Q5 자재발주를 위한 사양설명 시 100톤이 필요하나, 공정에 따라 감소나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실제 80톤만 필요하여 입고 후 대금 지급할 경우, 업체에서는 100톤을 생산하였으니 사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A5 원칙적으로 수량과 단가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거래일 경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적용가능. 즉, 자재의 생산시기, 납품주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공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탄력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면, 증감의 폭에 따라 단가는 달리 적용하는 슬라이딩 단가결정 시스템. 즉, 납품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 결정하는 것이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가능(예, 100~120톤은 단가 1,000원, 99~80톤은 1,100원).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구매인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의한 불이익 제공행위 적용도 적용 검토 가능

Q6 하도급입찰견적조건 및 현장설명 시 사전에 도면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 견적을 위한 내역을 전혀 확정하지 않고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고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여부는?

A6 원사업자는 위탁내용의 핵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시 최소한의 내역서나 도면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견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상관행임. 따라서 현장설명 시 불확정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그 비용을 현장설명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케 하면, 이는 수량과 금액을 사전에 전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도급위탁으로 부당소지 다만, 핵심, 중요한 사항이 아닌 도면이나 내역서상에 반영하기 어려운 미미한 위탁사항을 현장설명 시 견적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입찰에 임하였거나, 도면이나 내역서상 문제는 없으나 수급사업자가 단기 산출 착오라면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임.

③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제11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위반유형

① 소급단가 적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인화된 단가를 적용하였음. 이것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임.
- 피심인은 2010. 1월부터 2011. 2월까지의 기간동안 4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평균 1.0%~24.4% 인하하면서, 이미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화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424,790천원을 감액한 사례에서 과징금 약 23억원을 부과하였음.(공정위 의결 2012.8.30. 제2012-188호).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됨.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임.

④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음. 이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A사는 포장지 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하였음.

◎ 개념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1항)
-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함.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당감액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하도급대금을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 공정위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서식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심결/법령→하도급법→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임. 즉,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임.

⑥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부당감액임.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봄.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⑧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해당됨.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됨.

◎ 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함.
 - 감액사유와 기준
 - 감액금액
 - 공제 등 감액방법
 -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감액 시 공정위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함.
- 견적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된 후, 발주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봄.
- 합의의 진정성(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 여부)이 필요함.
 -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인지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534578판결)

Do

-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됨.
-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음.
-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함.
-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함.
-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게까지 인화된 새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 * 고객사의 발주최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주)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 이와 관련된 5개 수급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함.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원을 회수함).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주)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판단하고,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900만원)을 부과하였음.

사례 2

사실관계 진성이엔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②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③ 자신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6,500천원을 감액하였음.

공정위 판단 중소기업청장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197,000천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성이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하여 심각

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였고, 이를 공정위는 받아들였음.

사례 3

사실관계 삼성전자는 2003년 4월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6개의 수급 사업자로부터 기납품 받은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였음. 그 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중 폐기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

공정위 판단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이 사유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폐기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로 판단하여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과징금 부과 조치함.

사례 4

사실관계 평화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고무호스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수급사업자는 그 원자재를 가공하여 평화산업에게 납품하며, 평화산업은 매월말 원자재 공급대금을 공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음. 2009년 1월부터 평화산업과 수급사업자 간에 원자재 공급수량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고 평화산업이 일방적으로 공제금액을 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원자재의 공급과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되는 과정을 볼때 평화산업의 수량 결정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평화산업이 주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자재반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금액을 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사례 5

사실관계 동호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인수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의 10%인 1천만원을 다시 돌려 받음.

공정위 판단 동호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100% 현금지급을 대금지급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 현금지급을 이유로 대금10%를 돌려받았으므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사례 6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2.03.15)

사실관계 (주)한림은 2018. 4. 6.경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 ~ 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하였으나 하도급업체 A사가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 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함

공정위 판단 (주)한림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 부과

사례 7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2.04.11)

사실관계 동화정밀(주)는 2016. 9. 30. ~ 2019. 6. 3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8백만원을 감액하고 2018. 6. 30. ~ 2019. 1. 31. 기간 동안 클레임 비용 공

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백만원을 감액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동하정밀(주)가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Q&A

Q1 처음에는 계약 수량과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황변화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수량을 감축하는 합의를 한 경우, 단가인상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가?

A1 고정비 감소 등 계약 수량과 단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수량 감축에 따라 비용 등이 증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단가와 수량에 의해 하도급대금 확정 후 수량을 감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단가인상 등 보전을 해주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하고 있음.

Q2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A2 당초 예상보다 저가 수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Q3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A3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Q4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A4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Q5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A5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 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Q6 축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서상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실제 축로물량과는 차이가 있음), 당사가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 축로한 물량으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였을 경우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A6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라

면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거 하도급사업자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그러나, 물량증가, 단가증액 등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성격이 아닌 하도급 계약 자체를 당초 사후정산 물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 자체는 위 하도급법 제16조와 무관할 것이며,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항도 아님.

Q7 환율, 소재 등 가격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여 단가 소급하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A7 원칙적으로 금지된 단, 법 위반여부는 단가감액과 증액이 동등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기준 여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 가능함.

Q8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A8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9 환차손을 이유로 대금 결제수단(원화 및 달러화)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은?

A9 계약기간 중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제수단 임의변경은 부당함.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규 납품분부터 결제수단을 원화 또는 달러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제8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위반유형

① 부당한 위탁취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함.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됨.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함.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위탁 취소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 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함.
 - 공정위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봄.

② 부당한 수령거부

-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게 두게 되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목적물을 이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는 수령한 때로 봄.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 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 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 납품
 - 수급사업자가 생산 또는 운송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손, 훼손된 목적물 납품

◎ 개념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됨. (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법 제8조 제3항)

◎ 성립요건(심사지침)

-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 수리, 시공 등을 거부하여 납품 시기에 완성 가능성이 없을 경우
 -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공정, 공법을 변경하여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 후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의 대상이 됨.
-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함.
-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 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씨제이대한통운(주)는 2014년 4월 4일 수급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 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4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용역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 해제를 사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의결 제2015-304호, 2014서 제3288)
→ 부당 취소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사례 2

사실관계 (유)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보완 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설비 공급 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음.

공정위 판단 확인 결과 수급사업자는 지정 기일 내 공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재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 (유)한흥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사례 3

사실관계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하였음.

공정위 판단 삼성중공업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게 위탁취소 및 변경 등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될 손실 등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PCR시스템에는 위탁 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채 동의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함.

사례 4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2.03.23)

사실관계 (주)신성이엔지 등은 2016. 4.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 5. 수령하였으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함.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78일이 지난 후에 물품을 반품한 (주)신성이엔지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하므로 시정 명령 처분

• Q&A

Q1 건설공사 및 일반자재공급을 하는 중소기업체가 자재납품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윤리를 위반하여 자재납품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현재 계약기간 중인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을 해약하였다면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 취소 및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A1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임. 그러나 기업윤리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당해 기업윤리를 위반한 자재납품에 한하여 계약해지는 정당할 것이나 전혀 무관한 건설분야까지 해지하는 것은 기업윤리 규정을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단, 계약해지 시에도 기납품분에 대하여는 대금정산이 수반되어야 함.

Q2 하도급공사를 타절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A2 계약내용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하도급 계약을 타절하는 것은 법 위반 가능. 단, 수급사업자와 확정된 기성분에 대하여 대금 지급하고 미시공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후 정산절차를 정하여 타절하는 것은 가능함.

Q3 공법 변경 시 발주취소 및 계약해지 가능 여부는?

A3 공법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 취소한다면 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5 부당반품 금지(제10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위반유형

①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반품이라고 볼 수 있음.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함.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 사양변경, 모델단종, 판매부진 재고 증가, 보관장소 부족
 - 소비위축 경제상황 변동 등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 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 불량 때문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됨.

⑤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⑥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됨.

⑦ 하자에 대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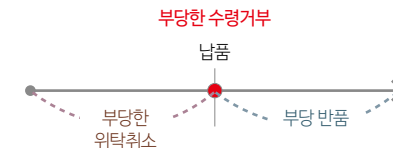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함.

• 부당한 위탁취소 vs 부당한 수령거부 vs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는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함. 반면,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임.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의 대상이 됨.
- *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당사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함.
- * 클레임약정서는 사전에 교부되어야 함.
-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함.

Don't

-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 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음.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 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큼을 감액한 하도급대금 합계 1,844,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 12.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의 이율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였음.

사례 2

사실관계 (주)에스디케스텍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발주자의 가공 과정에서 불량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400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품하였음.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하였음.

⑥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제12조의3)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위반유형

①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②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

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는 경우

③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2022년 2월 18일 시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법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공정위는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22.2.18 시행)하였으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는' → '비밀로 관리되는') 규제 범위를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위까지로 확대하였음('23.1.12시행)

◎ 개념

• 기술자료의 정의

-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 요건

① 비밀 관리성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 ②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작업공정도, 작업지시서, 기계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임상시험 방법 등
- ③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경제적 유용성)
 -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영업비밀과의 비교

기술자료(하도급법)		영업비밀(부경법)
要	비밀관리성	要
要	경제적 유용성	要
不要	비공지성	要

공정위 심결례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는 달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이라는 “비공지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공지의 정보 또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술자료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의 개념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 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됨.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금지되나,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
 -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추가요건 부과 → 현실적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

료요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운바, 치밀한 사전 논리개발과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

※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계도면 등과 같은 기술자료의 소유권 -一切를 당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그와 관련된 보상차원의 대가 지급을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공정위 심사지침 상 정당한 사유의 예시	정당성 인정 여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 요구해야 함.

* 기술자료 요구서 활용

- 기술자료 내역 / 요구목적 / 비밀유지사항 / 권리귀속 관계 / 대가 / 인도 일 및 방법 / 사용기간 /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및 폐기일 / 그 밖의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

- 기술유용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별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거래단계별 기술자료 제공 현황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이나 사용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有
- 조사시효는 7년, 서류의 보존기간도 7년으로 규정
 - * 일반적인 조사대상은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거래이전 단계〉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단계〉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 취득한 후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거래이후 단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업무상 유의사항

Do

[기술자료 요구]

-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마다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 * 공동기술개발약정 체결 후 그에 따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공동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출원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 납품 제품의 하자 발생 원인 규명, 불량 예방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밀유지의 무 등을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 공동기술 개발 참여 여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능력의 평가 또는 부품 승인 등에 필요하여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서면을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수익계약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 계약시 아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원재료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 폭 결정을 위해 해당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당사의 기술전수 또는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전수 또는 경영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

- *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사용한 경우

Don't

[기술자료 요구]

- *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는 경우
- * 기술자료 요구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정당한 대가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

-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 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 * 기술력을 심사한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당사의 기존 거래처나 관계사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동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제품을 납품 받은 경우
-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구한 경우

- *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 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제조업체인 모전장에게 건설장비용 하네스의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자 2016.1.6부터 2016.1.22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기존 수급사업자들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모전장에게 제공하였음. 모전장은 이를 분석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하였지만 기존 납품업체의 납품가격보다 높아 적용하기 어려워 모전장과 의 거래는 결렬됨. 또한 현대건설기계는 자동차 부문의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추세에 맞춰 건설장비에 적용될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를 개발하고자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피심인과 기존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현대건설기계는 기술자료를 그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원가를 절감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유용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수급사업자의 경험 및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바 고발함이 타당함.

사례 2

사실관계 엘지하우시스는 2003년부터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았으나,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가 엘지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비법이 포함된 기술자료임. 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음. 엘지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2 제2항에도 위반되며,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엘지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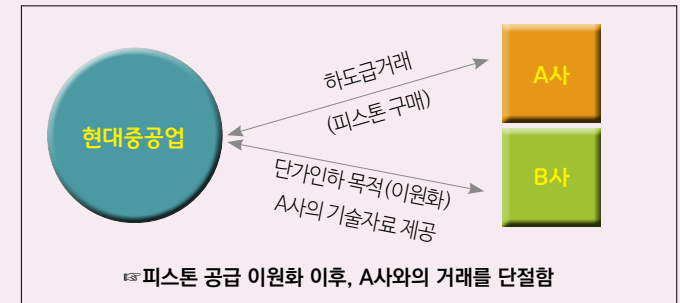
사례 3

사실관계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을 제조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음.

공정위 판단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중국 남경법인과 거래중이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는 등 피심인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음.

사례 4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 제품 제작 시 작업조건, 작업도, 작업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 가공이나 조립 시 제품과 공구의 작업위치를 지시,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인 지그가 작업과정에서 배치되는 형상과 관리공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 A사에게 4M* 관련보고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부품, 공정(Man, Machine, Material, Method)
-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9억7천만원) 부과

사례 5

사실관계

굴삭기 국내 1위 제조사인 D사는 굴삭기에 부착되는 에어 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탱크 구매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 A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하여 부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함.

공정위 판단 • ‘제작도면’이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부 반출시 대표이사의 승인 필요, 직원들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을 고려하면 비밀유지된 것으로 인정됨.
- 도면 등 자료만으로도 에어 컴프레셔 제작이 가능
-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에어 컴프레셔 기술개발, 시간, 노력, 비용을 상당히 단축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이 사안에서 D사는 기술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도 찾을 수 없고, 이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A사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하도급 위반에 해당. (공정위 심결 제2018-339호)

사례 6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1.12.15)

사실관계 대우조선해양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에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였으며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수급사업자의 선박 조명기구 기술자료를 자신이 공급받고자하는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조명기구 개선 요구를 위해 사용하거나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함.

공정위 판단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기술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례 7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2.02.08)

사실관계 (주)아모텍은 10개 중소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나 이를 교부하지 않은 아모텍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백만원 부과

사례 8 공정위 최신 심결례(2122.03.03)

사실관계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 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하고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였으며, 동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 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600만 원을 부과

사례 9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2.03.07)

사실관계 엘지전자(주)는 2015. 6월부터 2018.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엘지전자(주)가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백만 원을 부과

사례 10 공정위 최신 심결례(2022.03.28)

사실관계 세방전지는 2016. 4.~2019. 5.까지 3개 중소기업에게 납축전지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세방전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

Q&A

Q1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계약 중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가?

A1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생산원가 내역서'를 '기술자료'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함을 유의해야 함.

7.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5조)

▣ 위반유형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가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매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개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적용기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한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이것만은!

계열회사 등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OO과장입니다. □□구매 건과 관련해서 기왕이면 당사 계열회사인 ○○사의 제품을 사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구요? 물론 그렇지만,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목적물에 대한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역무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Q&A

Q1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건설위탁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자재라는 이유로 고가의 자재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할 경우 물품구매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A1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발주자의 요구) 물품구매 강제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계약 당시 고가의 자재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도 낮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고가의 자재사용에 따른 차액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할 것임.

Q2 수급사업자 B는 원사업자 A로부터 공사를 1억원에 수주받으면서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A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받았음. B는 물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1회 기성금으로 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A도 승인하였는 바, A가 승인한 2천만원에서 A가 제공한 물품대금 전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을 B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A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지?

A2 A가 B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A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규정 위반임. 또한 A가 기성금 지급시 물품대금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한 것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위반임.

Q3 전기기계 제조업자인 원사업자가 전기제품의 부품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구매담당자를 통해 자사상품의 판촉에 협력을 요청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3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제조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제품의 구입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구매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8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제12조)

◎ 개념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사전에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 지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지 말아야 함.
- *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 자신이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원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 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Q&A

Q1 원사업자 A는 전문업자 B에게 설비공사를 1억원에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고, 사업자 B는 기성실적에 따라 A에게 1회 기성금으로 2천만원을 청구하여 원사업자 A가 물품대금 1천만원(A로부터 구매한 물품 중 이때까지 투입금액은 200만원)을 차감하고 잔액 1천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A1 원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구매토록 한 물품이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 나 발주자가 A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A의 행위는 하도급상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이고 A가 제1회 기성금 지급시 물품대금전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B에게 지급한 것은 하도급법상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금지' 위반임. 원사업자 A가 정당하게 자기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다면 원사업자 A는 제1회 기성금 지급시 실투입된 200만원만 차감한 1천8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임.

Q2 수급사업자는 제조위탁을 받은 후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을 구매하여 다른 작업에 사용하였는데, 원사업자가 그 부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요구시 하도급법 위반여부는?

A2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제조를 위해 사용했어야 할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따르므로 이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물품 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Q3 원사업자가 유상 지급한 원재료의 대금결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일괄 결제하는 방법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A3 하도급대금과의 상계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시보다 빨리 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즉,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유상자재 대금을 당해 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면 안됨.

9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2조의2)

◎ 개념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법 제12조의2)

◎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현대삼호중공업(주)는 (유)한국특수산업, (주)WD중공업, (주)태형중공업, 삼강에스피(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파이프 피스 도장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지급보증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하였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10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제17조)

◎ 개념

- 원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 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후지카 대원전기(주)는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억3천234만9천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함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 1억3천234만9천원을 물품으로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 17조 위반사항으로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이것만은!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변제해서는 안됩니다.

“○○과장입니다. 이번 ○○아파트 창호공사 건 관련해서 말인데요, 하도급대금 일부는 아파트 0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분양가가 시세보다 무척 싸게 나온 건이라, 그 쪽에서도 이득일 거라 보는데요.”

11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제18조)

▣ 위반유형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경우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 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

- 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경영상 정보제공 요구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경영상 정보제공 요구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
 - 거래상 지위가 형성되지 않은 거래 개시 단계에서 거래조건을 협상,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경영상의 정보 유형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 /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관련 법령 조항

【 요구금지 원가 관련 정보 예시 】

1. 원가계산 관련 서류 : 원가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2. 회계정보 : 매출계산서, 매출처별 거래명세서 등
3. 영업정보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

◎ 정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 예시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함.
-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함.
-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Don't

-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토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의 생상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대우전자(주) 등 2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 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음.

법원 판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하였음. 이는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제품의 품질유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1차 수급사업자와 2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 조건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례 2

사실관계 OO전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승인원(Specification Sheet)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승인원에는 회로도, 부품의 종류와 구체적 기능, 동작원리뿐 아니라 원자재 구매처 및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조립방법까지 기재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담당 인력을 선정하게 하고 위 인력의 주요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음.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전담 인력을 선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위 인력으로 하여금 2차 벤더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법원 판단 '품질 유지 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간섭

한 행위로 보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주8522판결)

12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 개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법 제19조)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함.)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법 제20조)

◎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정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수급사업자인 (주)OO(대표 조OO)은 2010.9.28.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피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인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발주자인 ☆☆을 비롯하여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신고사실을 인지한 피심인은 2010.10.5. (주)OO 대표 조OO을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로 경남 고성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물량 이후 추가물량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및 ☆☆☆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은 기본계약서 제 3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2010.10.11. 신고인에게 계약해지예정을 통보하였음.

피심인은 2010.10.25. (주)OO이 제작하던 ---호선의 잔여물량에 대한 제조위탁계약을 태영산업(대표 최△△)과 체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주)OO과의 하도급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OO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법상 보복조치에 해당됨.

사례 2

사실관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어음할인료 중 00000 등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26,739천원을 2014.2.11., 2014.2.21., 2014.2.27. 3회에 걸쳐 피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그 시정결과를 위원

회에 제출함으로써 통상적인 조치보다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시 회수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13 탈법행위의 금지(제20조)

▣ 위반유형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주)백양은 봉제 임가공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후 한남인쇄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부담한 어음할인료 2억8천400만원 지급한 후 납품 단가의 인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 할인료 중 1억8천500만원을 다시 환수함.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2억8천400만원을 지급한 후, 납품단가의 인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중 1억8천500만원을 환수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하였는 바, 이는 탈법행위로서 하도급법 제20조 위반사항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함.

• Q&A

Q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후 합의서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는 바, 그 후 감사원 감사결과 영수증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영수확인한 금액보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적은 것을 확인하여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 원사업자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탈법행위인지?

A1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점 및 수급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영수증의 제출을 명한 것이 아니고 원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면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Q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조업안정과 조업품질의 향상을 위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① 원사업자의 사전 양해업이 지배주주의 임의변경 또는 주식양도를 금지하고, 친인척의 경영참여를 배제토록 하거나, ② 지배주주는 오로지 수급회사만을 경영함으로써 현장밀착 관리가 가능토록 하거나, ③ 자재의 사도급 판단 및 도급총액제 작업범위 조정 등은 원사업자 방침에 의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A2 ①항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고, 친고, 친인척의 경영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며, ②항은 다소 과도한 경영간섭 또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문제될 우려가 있으며, ③항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방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이 거래를 거절할 목적으로 실제로 작업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불공정 약관조항 또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될 수 있음.

7.3. 발주자의 의무사항

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14조)

● 개념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법 제14조 제1항)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4.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법 제14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4조 제3항)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함. (법 제4조 제4항)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법 제14조 제5항)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14조 제6항)
-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 (법 제2조 제10항)

◎ **적용기준(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어야 함.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외)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반드시 3자 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묵시적인,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유효)
-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는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 발생(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 가능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무 부담

◎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 금액의 확정이 직접 지급 의무의 전제이며, 직접 지급 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음.

• 관련 사례

사례 1

사실관계 씨티씨는 원사업자에게 골리앗 크레인 중 일부시설의 제조위탁을 하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음 씨티씨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음.

공정위 판단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합의를 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사례 2

사실관계 해룡학원은 원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고 원사업자는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일부를 위탁하였음 원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3, 4회 기성을 수령하고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3, 4회 기성금 지급을 요청, 해룡학원은 수급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이 가압류 되었다고 하면서 지급요청을 거부하였음 이후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 수급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룡학원은 원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였음.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2회 이상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하면 발주자는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함. 해당 사례에서 3, 4회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회 이상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지급 요청이 가압류 통보 보다 하루 앞서 전달되었던 점을 확인해 보면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관련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에서는 9가지 유형, 28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1.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공급사에 대하여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쟁사와 공동으로 구입을 거절하지는 않는가?	양호
	•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사업자와 거래하지는 않는가?	미흡
	•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 회사를 배제하지는 않는가?	
	2. 차별적 취급 -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거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지는 않는가?	보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거나 우대하지는 않는가?	
	• 물품 구매 또는 공사 발주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대해 구입단가, 선급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	
	• 사규, 공문, 계약 등을 통해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닌가?	
	3. 거래상 지위남용 -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기술, 노하우 등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가?	
	• [불이익제공] 상대방과 협의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지는 않는가?	
	•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는가?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지는 않는가?	
	• 선 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명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가?	
	• 사업자 귀책으로 공기, 납기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공사기간 또는 납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만 추가로 징구하지는 않는가?	
	• [경쟁간섭]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4. 구속조거부 거래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의 위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가?	
	• 자기가 구입하는 상품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자기가 운송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통해서만 운송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1.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를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임대료를 약정 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지는 않는가?	양호
	• 계열사 등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지는 않는가?	미흡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 등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는가?	
	• 계열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지는 않는가?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계열사 등에게 저리 대출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보유 중인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지는 않는가? • 계열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지는 않는가? • 계열사 소유 건물, 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않는가? 	보통
	2. 부당한 자산지원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	
	• 계열사가 발행한 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지는 않는가?	
	• 계열사 등의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기업어음을 매입하지는 않는가?	
	• 전환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지는 않는가?	
	• 금융회사의 특정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로 하여금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계열사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 등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등이 고가로 인수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외펀드를 통해 계열사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로 발행된 후순위 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저가로 계열사 등에 매도, 임대하거나, 고가로 계열사 등으로부터 매수, 임차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한 결과를 계열사 등에 무상 양도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 등에 매각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포함시켜 통행세를 챙겨 주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권 방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권 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 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하지는 않는가? 	
	3.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 등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4. 부당한 상품, 용역, 거래지원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 용역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매체에 정상광고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계열사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열사와 거래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대상의 특성상 거래 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지는 않는가? 	

2. 공시제도 관련

No.	거래 종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결정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확인	
		공시 해당	유형	거래 상대방	거래규모	공시 해당	유형	○	×
1	채무면제 상대방	○	자금	제한없음	자기자본 5% 이상	○	채무구조		
2	채무면제 받음	○	자금	제한없음	자기자본 5% 이상	○	채무구조		
3	채무인수	○	자금	제한없음	자기자본 5% 이상	○	채무구조		
4	채무인계	○	자금						
5	채무보증			제한없음	자기자본 5% 이상	○	채무구조		
6	자금대여	○	자금						
7	자금차임	○	자금						
8	유가증권매수(취득)	○	유가증권						
	유가증권매수(취득)주식	○	유가증권	계열회사 제외	자기자본 5% 이상	○	채무구조		
	유가증권매수(취득)출자증권	○	유가증권	계열회사 제외	자기자본 5% 이상	○	채무구조		
9	유가증권매도(처분)	○							
	유가증권매도(처분)주식	○	유가증권	계열회사 제외	자기자본 5% 이상	○	채무구조		
	유가증권매도(처분)출자증권	○	유가증권	계열회사 제외	자기자본 5% 이상	○	채무구조		
10	유상증자 참여	○	유가증권						
11	유상증자			제한없음	실시여부	○	채무구조		
12	무상증자			제한없음	실시여부	○	채무구조		
13	감자			제한없음	실시여부	○	채무구조		

No.	거래 종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결정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확인	
		공시 해당	유형	거래 상대방	거래규모	공시 해당	유형	○	×
14	전환사채발행	○	유가증권	제한없음	실시여부	○	채무구조		
15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	유가증권	제한없음	실시여부	○	채무구조		
16	교환사채발행	○	유가증권						
17	사모사채발행	○	유가증권						
18	비유동자산 매수(취득)	○	자산	제한없음	자산총액 10%	○	채무구조		
	비유동자산 매수(취득) 부동산	○	자산	제한없음	자산총액 10%	○	채무구조		
19	비유동자산 매도(처분)	○	자산	제한없음	자산총액 10%	○	채무구조		
	비유동자산 매도(처분) 부동산	○	자산	제한없음	자산총액 10%	○	채무구조		
20	부동산 임대	○	자산						
21	부동산 임차	○	자산						
22	자산 양도	○	자산						
23	자산 양수	○	자산						
24	영업 양도	○	자산	제한없음	실시여부	○	경영활동		
25	영업 양수	○	자산	제한없음	실시여부	○	경영활동		
26	상표권 사용권 제공	○	자산						
27	상표권 사용권 받음	○	자산						
28	기술 제휴	○	자산						

No.	거래 종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결정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확인	
		공시 해당	유형	거래 상대방	거래규모	공시 해당	유형	○	×
29	기술 이전 (제공)	○	자산						
30	기술 이전 (받음)	○	자산						
31	담보제공	○	공통						
32	담보받음	○	공통						
33	증여	○	공통	제한없음	자기자본 1%	○	채무구조		
34	수증	○	공통	제한없음	자기자본 1%	○	채무구조		
35	기타 내부거래	○	공통						
36	리스거래	○	공통						
37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		제한없음	실시여부	○	경영활동		
38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		제한없음	실시여부	○	경영활동		
39	회사 합병	○			실시여부	○	경영활동		
40	회사 분할	○			실시여부	○	경영활동		
41	주식교환·이전	○		제한없음	실시여부	○	경영활동		
42	해산사유 발생	○			실시여부	○	경영활동		
43	회생절차 개시	○			실시여부	○	경영활동		
44	회생절차 종결	○			실시여부	○	경영활동		
45	회생절차 폐지	○			실시여부	○	경영활동		

No.	거래 종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결정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확인	
		공시 해당	유형	거래 상대방	거래규모	공시 해당	유형	○	×
46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실시여부	○	경영활동		
47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			실시여부	○	경영활동		
4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종료	○			실시여부	○	경영활동		
49	최대주주 등의 변동	○			변동여부	○	경영활동		
50	임원의 변동	○			변동여부	○	경영활동		

3. 하도급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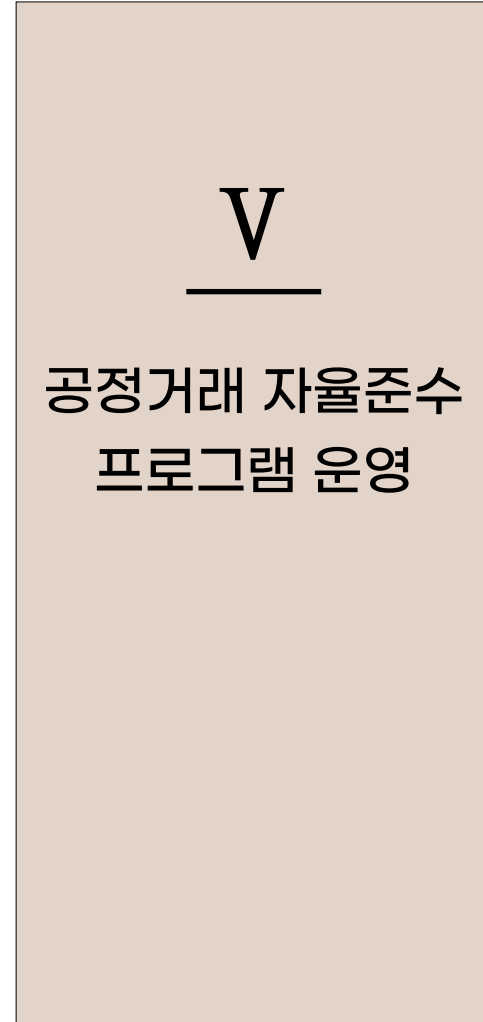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계약 체결 단계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일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는가?	양호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미흡
	•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보통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특정 수급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경쟁입찰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기타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3. 물품 구매 강제 금지	
	• 목적물의 품질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외에 물품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는가?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	
	• 법정기일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초과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5.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는가?	
	•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6.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지는 않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계약 이행 단계	1. 선급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	양호
	• 법정기일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초과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미흡
	2.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는가?	
	•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3. 부당한 경영간섭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지는 않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대금 지급 단계	1. 하도급대금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양호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미흡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이거나,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가?	
	2.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는가?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하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4. 공급원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히 임하는가?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기준

개정 이력			
최종 개정 현황	항 목	개 정 내 용	사유
일 부 개 정		·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와 권한, 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 임직원 제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하도급법 위반 유형에 따른 양정기준 신설	· CP운영의 독립성 보장 · 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 마련

개정 이력	개정 차수	페이지	개정일자	개정차수	페이지	개정 일자
	0차	전면	2006.11.10	8차	일부	2020.02.14
	1차	전면	2007.11.12	9차	일부	2021.01.18
	2차	전면	2009.06.15	10차	일부	2021.03.10
	3차	전면	2011.07.01			
	4차	전면	2012.05.21			
	5차	전면	2013.03.25			
	6차	전면	2014.11.01			
	7차	전면	2019.05.03			

1. 목적

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준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 3.1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규를 말한다.
- 3.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을 말한다(이하 “CP”라 한다.)
- 3.3 “자율준수관리자”란 회사 임직원 중 CP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 3.4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문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3.5 “담당부문”이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3.6 “CP 주관부서”라 함은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의 지원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직무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4.2 자율준수관리자

1)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3)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 (1) CP의 운영
- (2) CP와 관련된 계획 수립
- (3) CP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4) 조사 및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등 후속 조치
-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 (6) CP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 CP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8) CP 활동계획과 활동 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9)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
- (10)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 (1) CP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4)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2)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3)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4)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5)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본 운영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6) 회사는 본 기준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 (7)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4.3 자율준수협의회

1) 구성

자율준수협의회는 위원과 간사로 구성되며, 공정거래와 관련이 많은 부서장으로 자율준수협의회위원을 구성한다. 단, 본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변경 할수 있다.

-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담당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 (2) CP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2) 운영 및 역할

- (1)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청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 (2)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가.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 사항 권고, 자문
 - 나.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마찰 조정
 - 다. 위원별 담당부서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
 - 라.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 마.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4.4 공정거래실천리더

1) 선임 및 역할

-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담당부서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위원별 담당부서의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공정거래실천리더로 선임한다.
- (2) 공정거래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 나. 담당부서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 다. 담당부서 자율점검 활동 총괄
 - 라. CP운영 개선사항 발굴

4.5 임직원

1)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점검

- (1) 임직원은 문서관리 시스템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일상업무 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 (2) 자율점검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CP 주관부서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 (3) 공정거래실천리더는 반기단위로 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담당부서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하고 CP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5. 업무절차

5.1 CP의 운영

- 1) CP 주관부서는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 CP 활동내역을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최소 연 2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CP 주관부서는 C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문서를 현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2 자율준수편람의 작성·활용

- 1)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실제업무수행에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며,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5.3 교육프로그램 운영

- 1)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여야 한다.

- (1) e-러닝 교육을 이용한 on-line 교육
 - (2) 각 부서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line 교육
 - (3) 윤리웹진(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을 이용한 교육
 - (4)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 2)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
 - 3) 의무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사유서를 CP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부서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4 문서관리체계

- 1) CP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회사 내부시스템에 공정거래 관련 문서함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CP 주관부서 및 회사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문서 발생시 공정거래 문서함에 등록, 보관하여야 한다.

5.5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1) CP 주관부서는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문 또는 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3)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자율준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6 상담 및 신고

- 1) CP 주관부서는 부서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2) 각 부문 공정거래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점검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 또는 법무담당부서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 3)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상담인은 필요 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5) 자율점검 Check 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상담인과 상담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면제하거나 제재를 경감할 수 있다.
- 6)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7)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8) 상담인 및 CP 주관부서는 상담을 의뢰한 자나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신고한 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는 신분 및 상담·신고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위반자에 대한 제재

- 1) 제재조치요구
 - (1) 본 운영지침 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
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지침 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2) 징계의 원칙과 절차

- (1)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 (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주관부서는 위
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인
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
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인사위원회는 별첨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을 참고하여 제재조치를 하여
야 한다.
-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
별관리기준 5.17(징계) 및 취업규칙기준 5.10(포상 및 징계)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5.8 임직원의 포상

- 1)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 자율점검 활동이 타의 모범을 보인 직원이나 부서
 - (2) 공정거래교육 참석이 우수한 직원
 - (3) 불공정 관행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공헌한 직원이나 부서

5.9 운영 평가

-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
고 그 결과를 CP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6. 기록 및 관리

기록	첨부	보존연한
		5년

7. 관련 문서

해당사항 없음.

8. 별첨

- 하도급법 위반 유형 및 양정 기준

끝.

부 칙

이 기준은 2021. 3. 10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 하도급법 위반 유형 및 양정 기준>

1. 하도급법 위반 유형

	중대한 위반 (상-100점)	(중-67점)	경미한 위반 (하-33점)
구분 (100점)	부당감액, 부당반품, 위탁취소, 기술자료 유용 등 해당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사항	물품 구매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대금 미지급 등 법률 위반 행위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사항	서면 미발급, 수령증명서 미발급, 내국신용장 미개설 등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
행위 유형 (50%)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위탁취소한 행위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 ④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⑤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⑥ 제19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 ⑦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등의 탈법행위	① 제5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 등을 강제로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한 행위 ② 제12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청구한 행위 ③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물 변제한 행위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행위 ⑥ 제6조를 위반하여 선급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또는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⑦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감액금액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⑧ 제13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공금이나 기성금 지연 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서면을 발급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 ② 제7조를 위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행위 ③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④ 제9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 아니한 행위 ⑤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⑥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⑦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대금 지급보증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행위 ⑧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행위 ⑨ 제1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⑩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

행위 유형 (50%)		⑨ 제16조를 위반하여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금액 변동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 추가 하도급 대금 및 관련된 지연 이자, 어음할인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⑫ 제17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
횟수 (30%)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3번째 및 그 이상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2번째인 경우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처음인 경우
업체 (20%)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3개社 이상인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2개社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1개社 경우

2. 위반 유형에 따른 양정 기준

조사주체	위반행위 유형별 평가점수	양 정	비 고
공정위 (직권, 신고조사)	50점 이상	징계	중대
	50점 미만	사장 경고	
법무실 및 정도경영 (자체점검)	90점 이상	징계	
	70점 이상	사장 경고	
	50점 이상	본부장 경고	
50점 미만	주의		

3. 양정 감경 및 가중사항

구 분	내 용
감경대상	-법 위반의 자발적 인정 및 반성 -신입/전입 사원 혹은 해당 업무 미숙련자의 업무 미숙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 상담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
가중대상	-유사 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 -불성실 조사 대응 및 허위진술 -동일조사에서 동일인의 지적 건수가 다수인 경우 -기타 고의적, 악의적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가중이 필요한 경우

4. 관리책임 양정 기준

구 분	내 용
관리책임 정의	부하직원의 업무과실이 발생할 경우 직책보임자는 관리, 감독 노력정도에 따라 인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단기준	-법 위반 행위가 당해 직책보임자의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해야 함 -해당업무에 대해 직책보임자로서주의의무가 결여 되어야 함 -법 위반 행위가 직책보임자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직책보임자에게 관리책임이 아닌 직접 책임에 의한 인사조치 의뢰
적용범위	업무과실자의 직상급자를 포함하여 인사조치 의뢰
양정범위	업무과실자 인사처분 대비 동등 혹은 1단계 낮은 수준으로 인사조치 의뢰

2. 건설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산업기본법(약칭 '건설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당사는 건설사업자 (건설업면허 보유)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하도급</td> <td>건설법</td> </tr> <tr> <td>원사업자</td> <td>수급인</td> </tr> <tr> <td>수급 사업자</td> <td>하수급인</td> </tr> </table>	하도급	건설법	원사업자	수급인	수급 사업자	하수급인
하도급	건설법							
원사업자	수급인							
수급 사업자	하수급인							
제22조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3조와 (서면교부의무) 유사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22조의3 (계약의 추정)	<p>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p>	<p>하도급법 제3조 제6항과 동일 (하도급계약 추정) → 건산법보다 하도급법 우선 적용</p>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p>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무면허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지</p>
제28조 (하자담보 책임)	<p>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발전, 가스 및 산업설비(5~7년), 중규모 건축물(5년), 보일러 및 조립성 건축물(1년)</p>	<p>법적 의무기간을 넘는 하자보증이 필요한 경우 법무실과 협의 필요 (부당특약 Risk)</p>
제29조 (하도급 제한)	<p>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p> <p>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p> <p>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p>	<p>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수급인(원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p> <p>재하도급을 승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p> <p>불법 재하도급 이라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p>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31조 (하도급 계약 적정성)	<p>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p> <p>*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 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 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82% 또는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p>	<p>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적용 시 고려</p>
제33조 (하도급 대금 지급 등)	<p>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p> <p>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21. 7. 27.></p> <p>⑥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p>	<p>하도급법 제13조 (대금지급의무)과 유사 내용 → 하도급법 우선적용</p> <p>하도급법 제6조 (선급금 지급의무)와 유사 내용 → 하도급법 우선적용</p>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34조의2 (하도급 계약 이행보증)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와 유사 내용
제35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p>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p>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유사 내용 → 하도급법 우선적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36조 (설계 변경 등)	<p>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p> <p>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유사 내용 → 하도급법 우선적용
제37조 (검사 및 인도)	<p>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p> <p>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p>	하도급법 제9조 (검사의 방법 등) 유사 내용 → 하도급법은 10일 이내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함격함 것으로 간주하므로 각별히 주의!!
제38조 (불공정 행위의 금지)	<p>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20.></p> <p>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하도급법 제5조 (물품등 구매강제)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 유사 내용
제38조 (불공정 행위의 금지)	<p>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p> <p>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하도급법 제19조 (보복금지) 유사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사업주(법인+개인)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계약조건 등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보건에 의무를 전가하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한 재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Risk가 높음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법인, 기관에 대해서 10~50억원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제7조)

■ 안전관련 주요 2개 법 비교(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등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단, 안전보건관리체계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은 3년 후 시행)
재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 신안법상 산업재해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 1명 이상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3) 동일 유해요인으로 작업성 질병자 1년내 3명이상
의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의 안전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2)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3) 추락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가스, 병원체 등 위험물질 2) 신체부담 위험 작업 3) 환기, 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 규칙으로 680개 조문 구체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관리상 조치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등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기관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posco
포스코케미칼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북

발행인 포스코케미칼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발행처 기획지원본부 법무실
발행일 2022년 07월
편집·제작 (주)블루리밴드